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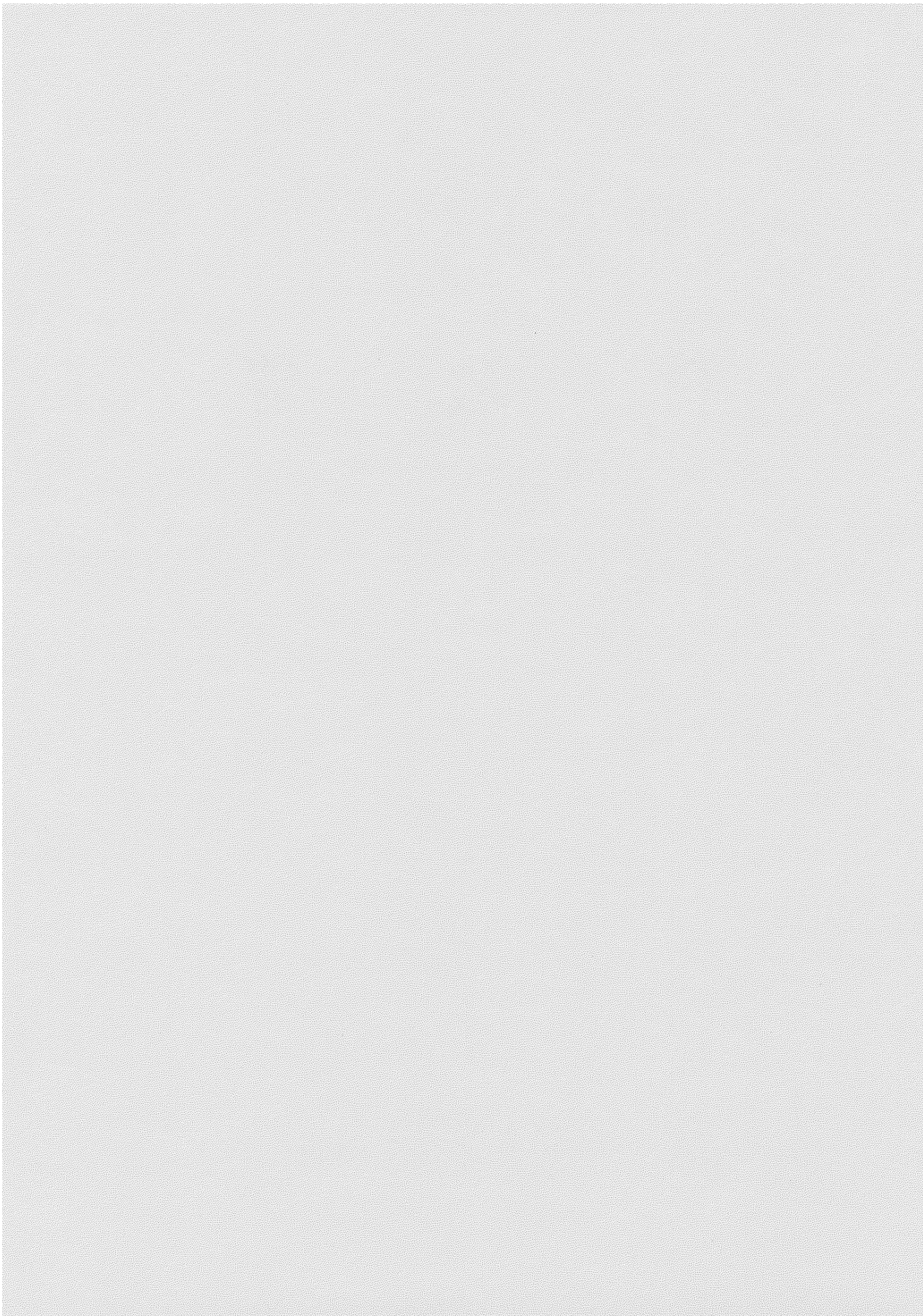
第154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 會 議 錄

(2003.6.25. ~ 6.27.)

忠清北道教育委員會







第154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 本會議會議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 목 차

I. 개회식 .....	3
II. 제15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5
III. 제15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	13
IV. 부록	
1. 의사일정안 .....	19
2.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21
3.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27
4.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	29
5.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보고서 .....	33
6.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보고서 .....	43







#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3년 6월 25일 (수요일) 14시 02분

## 開會式順(第154回 臨時會 開會式)

1. 개식
2. 국기에대한경례
3. 폐식

(사회:의사담당 김영구)

(14시 02분 개식)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본 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 ● 의사담당 김영구

지금부터 제15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14시 04분 폐식)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주악)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3년 6월 25일 (수요일) 14시 04분

## 議事日程 (제1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154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5. 예산·결산소위원회구성건의건

## 附議된 案件

1. 경과보고(의사과장)
2. 제154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3.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4.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교육감 제출)
5.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교육감 제출)
6. 예산·결산소위원회구성건의건(의장 제의)

(14시 04분 개의)

### ● 의장 이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집행청으로부터 임홍빈 중등교육과장님께서 교원임용권 지방이양 관련 회

의 참석으로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경과보고

### ● 의장 이상일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제154회-제1차 본회의]

(의사과장 발언대로 나눔)

● 의사과장 김용환

의사과장 김용환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및 안건 제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3년도 6월 17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교육위원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날 공고 제2003-6호로 제15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였으며, 같은날 교육감으로부터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및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의회 제출 안건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4월 25일 제1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여 2003년 5월 9일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한 안건 중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5월 29일 제21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되어 2003년 6월 5일 충청북도조례 제2754호 및 2755호로 공포되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

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2003년 5월 29일 제21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의결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중에는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및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처리하시겠습니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과장 자리로 돌아감)

● 의장 이상일

의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2. 제154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14시 08분)

● 의장 이상일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1항 제154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54회 임시회 회기는 6월 25일부터 6월 27일까지 3일간으로 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에 예산·결산소위원회를 구성하고, 6월 26일에는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6월 27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부의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제154회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6월 25일부터 6월 27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의사일정안(별첨 1)

(끝에 실음)

3.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

5.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에비

비지출승인의건

(14시 10분)

● 의장 이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에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계서는 나오셔서 안건별로 각각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옴)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일 의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 여러분!

21세기 선진교육을 지향하는 활기찬 충북교육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의정활동을 통해 교육정책에 대한 발전적인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셨음은 물론, 의안들을 합리적으로 처리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03년 3월 1일자로 신설 개교한 주성고등학교의 지번 확정에 의한 주소변경과 2003년 9월 1일자 단설유치원 2개원을 개편 설립하게 되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성고등학교의 지번 확정에 따라 동 조례 별표1의 주성고등학교 위치인 용암동 364번지를 용암동 437번지로 변경하고, 동 조례 별표6의 명칭 및 위치란 중 2003년 9월 1일자 단설유치원으로 개편 설립하기 위하여 남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과 서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삭제하고, 남성유치원과 서원유치원을 삽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154회-제1차 본회의]

▶ 참 조 :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  
조례안(별첨 2)

(끝에 실음)

다음은 2002회계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의건입니다.

먼저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를 2002년 5월 9일부터 5월 16일까지 8일간 충청북도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번 임시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 세입결산은 1조 1,509억 4,884만원이고, 세출은 9,986억 1,578만원으로서 1,523억 3,306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605억 1,000만원이 이월사업비이고, 순세계잉여금은 918억 2,306만원으로서 2003년도 예산 재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결산에 있어서 1조 1,509억 8,052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99.9%인 1조 1,509억 4,884만원을 수납하였으며, 그중 자체수입은 19.1%인 2,204억 6,357만원이며, 의존수입은 80.9%인 9,304억 8,527만원입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1조 1,522억 7,461만원으로 86.7%

인 9,986억 1,570만원을 집행하였고, 명시이월사업비 282억 6,182만원과 사고이월사업비 322억 4,818만원 등 605억 1,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931억 4,883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의 내용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3,940억 5,374만원, 물건비 1,202억 8,820만원, 경상이전비 2,611억 3,442만원, 자본적지출 2,090억 6,279만원, 차입금상환 138억 4,800만원, 자치단체 내부거래 2억 2,863만원으로 총 9,986억 1,578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액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액은 원어민교사 주택 및 교원단체 사무실 전세권 2억 8,133만원, 재산임대료 등 4종에 5,661만원, 공무원자녀 대여학자금 333억 2,938만원으로 총 336억 6,732만원입니다.

채무액은 차입금 665억 400만원으로 교원명예퇴직수당 및 학교통폐합지원비와 학교시설비에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말 공유재산에 대한 현재액은 행정재산 1조 9,528억 4,731만원, 잡종재산 419억 9,969만원으로 총 1조 9,948억 4,700만원이고, 물품 현재액은 1만 6,715종에 889억 6,844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난 한해 동안 추진한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학교의 교육자치기반을 구축하고 학교장 중심의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의 기본운영비 692억 1,685만원과 목적사업지원비 738억 76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학생 수용시설 확충을 위하여 2002년 9월 개교한 청주동주초등학교와 2003년 이후 개교 예정으로 추진하는 신설학교의 부지매입, 설계 등에 총 625억 9,869만원을 투자하였고, 과밀학교 완화를 위한 부족교실 증축에 487억 5,899만원, 제7차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시설 201억 5,802만원, 학교시설 확충과 증·개축 243억 4,384만원,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551억 8,99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교육행정기관 시설사업에 72억 5,537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앞서가는 교육정보화 기반을 구축하여 학교를 작은 정보화 사회로 건설하고 2단계 교단선진화 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정보화 사업에 143억 1,82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학생 심신의 건전한 발달도모와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고자 결식아동 중식비 지원 43억 3,185만원과 학교급식 운영 및 시설 확대에 9억 2,823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건실한 사학으로 육성 지원하여 공·사립학교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사립

학교의 내실있는 교육을 위하여 인건비와 운영비에 646억 2,946만원, 시설비 등 기타 사업에 211억 1,638만원으로 총 587억 4,58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 참 조 :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별첨 3)

(끝에 실음)

2002회계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개요(별첨 1)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별첨 2)

끝으로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3건에 16억 1,79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2년 4월 충청북도교육감 보궐선거를 위한 선거관리 경비 납부 요청에 의거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1억 3,48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002년 8월중 하절기 집중호우 및 태풍 루사로 인한 재해 발생으로 교육시설의 피해를 입은 지역에 2학기 교육과정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청주, 충주, 진천 지역 피해학교의 복구비 3억 4,698만원과 보은, 옥천, 영동 지역 피해학교의 복구비 11억 3,613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원하였습니다.



[제154회-제1차 본회의]

자세한 내용은 교육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자리로 돌아감)

▶ 참 조 :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별첨 4)

(끝에 실음)

● 의장 이상일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52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남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 및 서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2003년 9월 1일자로 각각 단설유치원으로 설립 운영하려는 것으로, 조례에 병설유치원을 삭제하고 단설유치원을 삽입하려는 것과 택지개발지구내의 지번이 확정됨에 따라 주성고등학교의 조례상 위치를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364번지에서 용담동 473번지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성 및 서원유치원은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신 사항이며, 주성고등학교의 조례상 위치 변경 사항은 개정 조문내용이 간단한 바 조례심

사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직접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소위원회는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6. 예산·결산소위원회구성건의

(14시 21분)

● 의장 이상일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소위원회구성건의를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에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소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모든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소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즉시 예산·결산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6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회의록 서명위원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5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은 성영용 위원님과 송대현 위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과 열정적으로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바 있는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3일까지 제주도 일원에서 열린 제32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우리 선수들이 금 31개, 은 27개, 동 32개, 도합 90개의 메달을 획득하여 전국 종합 3위의 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이는 충북의 열악한 체육환경 속에서도 부단한 연습과 노력으로 우수한 성적을 이룬 것은 선수, 지도교사, 코치, 학교장, 그리고 학부모 모두가 혼연일체 노력한 결과라 생각되어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학교체육 발전을 위한 열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천호 교육감님과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7월 4일 실시될 예정인 본도 교육청에 대한 교육인적자원의 평가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15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

[제154회-제1차 본회의]

---

0 출석위원 : 7명

의장 이상일, 부의장 고규강,

위원 김남훈, 성영용, 송대현, 이기수, 진옥경.

0 출석공무원 : 13명

교육감 김천호, 부교육감 김용호, 교육국장 반창남,

기획관리국장 이상길,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초등교육과장 정무,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겸,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평생교육체육과장 이기석,

총무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시설과장 안세열.

※ 부 록

- ▶ 의사일정안(별첨 1)
- ▶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별첨 2)
- ▶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별첨 3)
- ▶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별첨 4)

※ 별 책 부 록

- ▶ 2002회계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개요(별책 1)
- ▶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별책 2)



# 本 會 議 會 議 錄

忠淸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3년 6월 27일 (수요일) 11시 00분

## 議事日程 (제1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200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 附議된 案件

1.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2. 200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교육감 제출)
3. 200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교육감 제출)

(11시 00분 개의)

### ● 의장 이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집행청으로부터 반창남 교육국장과 신건환 공보감사담당관께서는 교원공제회 관련 회의 참석으로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 의장 이상일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남성 및 서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2003년 9월 1일자로 각각 단설유치원으로 설립 운영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이미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 주성고등학교 위치 변경 사항은 개정 조문내용이 간단하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에비비지출승인의건

(11시 03분)

#### ●의장 이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에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 김남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안건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 발언대로 나눔)

#### ● 예산·결산소위원회위원장 김남훈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 김남훈 교육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위 안건은 지난 6월 17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5일 금번 회기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회부된 날로부터 2차에 거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주요내용은 이미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충분히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1조 1,522억 7,461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조 1,509억 8,052만 4,000원으로 결산액은 징수결정 대비 99.9%인 1조 1,509억 4,884만 4,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1조 610억 7,651만 6,000원이고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911억 9,809만 7,000원이 포함된 1조 1,522억 7,461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예산 현

액 대비 86.7%인 9,986억 1,578만 5,000원으로 1,523억 3,305만 9,000원의 세계잉여금이 발행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예산 현액의 5.2%인 605억 999만 9,000원으로 대부분 시설공사비이며 불용액은 예산 현액의 8.1%인 931억 4,882만 8,000원으로 불용액의 대부분은 예비비, 시설비, 급여 및 복지후생비입니다.

이어서 예비비 결산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교육감 보궐선거 관리경비 1억 3,488만 3,000원과 2002년 8월 13일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복구비 3억 4,698만원이며, 2002년 9월 5일 태풍 루사로 인한 재해복구비 11억 3,613만원으로 금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된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의 2002년도 말 현재액은 336억 6,742만 4,000원으로 채권액의 대부분은 공무원자녀 대여학자금입니다.

채무는 2002년도 말 현재액이 665억 400만원으로 채무의 대부분은 교원명예퇴직수당, 학교통폐합 지원 및 학교시설비를 충당하기 위해 기채한 것입니다.

다음은 재산의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2002년도 말 현재액은 1조 9,948억 4,700만 3,000원이며, 물품의 2002년도 말 현재액은 1만 6,715점에 889억 6,844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한 종합의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채권·채무결산, 재산의 결산 등 각 분야별 결산내용은 지방재정법을 비롯한 제규정과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의거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각종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에 적정을 기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소요예산 편성시에도 합리적이고 적절한 판단으로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 가능한 익년도로 이월되는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 조 :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보고서(별첨 5)  
(끝에 실음)

다음은 200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주요내용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2002년도 4월 충청북도교육



[제154회-제2차 본회의]

감 보궐선거 관리경비 1억 3,488만 3,000원과 집중호우 및 태풍 루사에 의한 자연재해복구비로 14억 8,311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적정하게 처리되었다고 판단되나 향후 재해 예방대책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 조 :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보고서(별첨 6)  
(끝에 실음)

끝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모두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을 의결하였으며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심도있는 의안심사와 적극적인 소위원회 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 교육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계서도 그 동안 소위원회 활동에 성실히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 자리로 돌아감)

● 의장 이상일

김남훈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두 안건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안건이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예산·결산소위원회 심사결과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예산·결산소위원회 심사결과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

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 집행청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 환자가 발생하고, 또 이에 따라 방역 당국이 초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도에서도 청원군 강내면 초등학교에서 세균성 이질환자가 발생하여 학교 급식이 중단되고, 단축 수업을 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청에서는 이에 철저한 대비와 예방을 강구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은 상황이 중대한 만큼 학생들의 보건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더 이상의 환자가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하절기와 장마철에 대비하여 학생들에게 먹는 물에 대한 보다 철저한 교육으로 위생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 및 제15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폐회)

0 출석위원 : 6명

의장 이상일,

위원 김남훈, 성영용, 송대현, 이기수, 진옥경.

0 출석공무원 : 12명

교육감 김천호, 부교육감 김용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초등교육과장 정무, 중등교육과장 임흥빈,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겸,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평생교육체육과장 이기석, 총무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시설과장 안세열.

※ 부 록

- ▶ 2002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보고서(별첨 5)
- ▶ 2002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보고서(별첨 6)

제15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2003. 7. .

의 장 이 상 일 이 상 문

위 원 성 영 용 성 영 용

위 원 송 대 헌 송대헌

의사국장 이 상 기 이 상 기

# 議 事 日 程 (案)

第154回 忠淸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2003. 6. 25. ~ 6. 27.(3日間)

日 時	附 議 案 件	備 考
6월 25일(수) (14:00)	<input type="checkbox"/> 개 회 식 <b>[ 제1차 본회의 ]</b> 1. 제15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회 기 : 2003. 6. 25. ~6. 27.(3일간) 2.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3. 200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제안설명) 4. 200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제안설명) 5. 예산·결산소위원회 구성의 건  <input type="checkbox"/> 소위원회 활동 • 예산·결산소위원회	
6월 26일(목) (10:00)	<input type="checkbox"/> 소위원회 활동 • 예산·결산소위원회	본회의 휴회
6월 27일(금) (11:00)	<b>[ 제2차 본회의 ]</b> 1.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200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input type="checkbox"/> 폐 회	





(별첨 2)

의안번호	제 144 - / 호
의결 연월일	2003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연월일	2003년 6월 17일

#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4-1
----------	-------

제출년월일 : 2003. 6. 7.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개정사유

2003. 3. 1자 신설·개교한 1개 고등학교의 지번 확정에 의한 주소 변경과  
2003. 9. 1자 단설유치원 2개원을 설립(개편)하게 되어 충청북도립학교설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2003. 3. 1자로 신설·개교한 고등학교의 지번 확정에 의한 주성고등  
학교 주소를 변경함. (별표1).
- 2003. 9. 1자로 단설유치원으로 개편·설립하는 청주 남성초등학교병설  
유치원과 서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삭제하고, 남성유치원과 서원유치원을  
삼입함. (별표6).

## 개정근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4조

## 개정 조례안 : 불 입

## 덧 불 입

- 신·구 조문대조표
-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서.

##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주성고등학교 위치란 중 “용암동 364번지”를 “용담동 437번지”로 한다.

별표 6의 산성유치원란 다음에 남성유치원란과 서원유치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남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 및 서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을 삭제한다.

남성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219-1번지
서원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977번지

### 부 칙

이 조례는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조표

[별표 1]

현		행		개		정		안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명	칭
상당고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03번지		상당고등학교		( 현행과 같음 )			
주성고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364번지		주성고등학교		----- 용담동 437번지			
( 생 략 )				(현행과같음)					

[별표 6]

현		행		개		정		안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명	칭
산성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 438번지		산성유치원		( 현행과 같음 )			
< 신	설 >			남성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219-1번지			
< 신	설 >			서원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977번지			
( 생 략 )				(현행과같음)					
한별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격1동 560번지		( 현행과		같 음)			
남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219-1번지		< 삭	제 >				
서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977번지		< 삭	제 >				
( 생 략 )				(현행과같음)					

# 참 고 사 항

## ○ 단설유치원 설립

유치원명	위 치	개원년월일	설립사유
남성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2191번지	2003. 9. 1.	공교육화 기반 조성
서원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977번지	2003. 9. 1.	공교육화 기반 조성

## ○ 병설유치원 폐지

유치원명	위 치	폐지년월일	폐 지 사 유
남성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2191번지	2003. 9. 1.	단설유치원으로 개편 설립
서원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977번지	2003. 9. 1.	단설유치원으로 개편 설립



# 관계법령발췌서

## □ 교육기본법

제11조(학교 등의 설립)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사회교육 시설을 설립·경영한다.

##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교육기관의 설치) ① 교육감은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별첨 3)

의안번호	제 174 - 2 호
의 결 연 월 일	2003년 월 일 (제 회)

200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 연 출 월 일	2003년 6월 17일

## 200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견

의안 번호	1√4-2
----------	-------

제출년월일 : 2003. 6. 19 .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하여 작성한 200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에 의거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심의·의결을 받고자 함.

### 2. 주요골자

2002년도 본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중 세입결산액은 1,150,948,844,640원, 세출결산액은 998,615,785,160원이며, 이월사업비는 60,509,999,300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91,823,060,180원으로서 총 152,333,059,480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함.

3. 200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 따로붙임.

### 4. 참고사항

2002회계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 : 따로붙임.

(별첨 4)

의안번호	제 154 호
의결 연월일	2003년 월 일 (제 회)

200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지출 승인의건

제출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연월일	2003년 6월 17일

# 200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견

의안  
번호 154 →

제출년월일 : 2003. 6. 17.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제안이유

200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 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함.

주요골자

- 지출건수 : 3건
- 지출결정액 : 2,044,776,000원
- 지출액 : 1,617,992,580원
- 잔액 : 426,783,420원
- 지출사항
  -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의 충청북도교육감 보궐선거 관리경비 납부요청에 따른 경비 납부금 190,541,000원
  - 집중호우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일부지역의 교육과정 수행에 필요한 교육시설 피해복구비 388,900,000원
  - 태풍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일부지역의 교육과정 수행에 필요한 교육시설 및 교재·교구 피해복구비 1,465,335,000원

예비비지출내역

(단위 : 원)

건명	지출결정일	지출결정액	지출액	잔액	비고
보궐선거 관리경비	'02. 4. 8	190,541,000	134,882,950	55,658,050	교육감 보궐선거 관리경비
호우 재해복구비	'02. 8. 13	388,900,000	346,979,910	41,920,090	청주, 충주, 진천지역 호우 피해복구비
태풍 재해복구비	'02. 9. 5	1,465,335,000	1,136,129,720	329,205,280	영동, 옥천, 보은지역 태풍 피해복구비
계		2,044,776,000	1,617,992,580	426,783,420	

예비비 사용명세서 : 별첨

## 2002년도 예비비 사용명세서

□ 예비비 지출 사용현황

과 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잔액	비 고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교육행정	선관	거리	선관	거리	교육위원 및교육감 선거	교육사업비	전출금	190,541,000	134,882,950	55,658,050	교육감 보궐선거 관리경비
학교교육	중학교	시	설	중	학교시 설관리	학교시설 사업비	시설비	3,000,000	3,000,000	0	호우 재해복구비 (신니중)
학교교육	고등학교	시	설	중	학교시 설관리	학교시설 사업비	시설비	4,000,000	3,800,000	200,000	(충북예술고)
교육행정	지역교육청	지역교육청	지역교육청	지역교육청	지역교육청	기타 사업비	시설비	31,000,000	22,769,000	8,231,000	(구)동량초하천 분교장의 2교
교육행정	교육지원기관	지원기관	지원기관	지원기관	지원기관	기타 사업비	시설비	350,900,000	317,410,910	33,489,090	(학생종합야영장, 충주중원학생야영장)
소 계								388,900,000	346,979,910	41,920,090	
학교교육	유치원	운영비	운영비	운영비	유치원	교육사업비	학교회계 전출금	57,890,000	57,890,000	0	태풍 재해복구비 (황간초 병설유)
학교교육	초등학교	운영비	운영비	운영비	초등학교	교육사업비	학교회계 전출금	223,661,000	223,661,000	0	(황간초)
학교교육	초등학교	시	설	중	학교시 설관리	학교시설 사업비	시설비	682,440,000	465,622,060	216,817,940	(창산초, 황간초, 매향초)
학교교육	중학교	시	설	중	학교시 설관리	학교시설 사업비	시설비	327,724,000	240,097,360	87,626,640	(보덕중, 청산중, 황 간중, 상촌중)
교육행정	지역교육청	지역교육청	지역교육청	지역교육청	지역교육청	기타 사업비	시설비	8,000,000	4,648,000	3,352,000	(구)화곡초 (구)황학분교장
교육행정	교육지원기관	지원기관	지원기관	지원기관	지원기관	기타 사업비	시설비	165,620,000	144,211,300	21,408,700	(옥천, 영동학생 야영장)
소 계								1,465,335,000	1,136,129,720	329,205,280	
합 계								2,044,776,000	1,617,992,580	426,783,420	



□ 예비비 지출사유

○ 보궐선거 관리경비 납부

2002. 4월 충청북도교육감 보궐선거를 위한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경비 납부요청에 의거 납부

○ 집중호우 재해복구비 지원

2002. 8. 5~8. 9일 기간 중 하절기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으로 청주, 충주, 진천 지역의 일부 교육시설이 피해를 입어, 2학기 교육과정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복구비를 지원

○ 태풍 재해복구비 지원

2002. 8. 31~9. 1일 기간 중 태풍 「루사」에 의한 집중호우로 자연재해가 발생한 보은, 옥천, 영동 지역의 일부 교육시설이 피해를 입어 학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복구비를 지원

(별첨 5)

(제154회 임시회)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심 사 보 고 서 (안)

2003. 6. 27.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 200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견

## 심 사 보 고 서 (안)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년 6월 17일, 충청북도교육감

나. 상정 및 회부일자 : 2003년 6월 25일 제1차 본회의

다. 소위원회 심사

○ 제1차 소위원회(2003년 6월 25일)

○ 제2차 소위원회(2003년 6월 26일)

###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제안설명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200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함.

나. 주요골자

○ 2002년도 본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중 세입결산액은 1,150,948,844천원, 세출결산액은 998,615,785천원이며,

○ 이월사업비는 60,509,999천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91,823,060천원으로 총 152,333,059천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됨.

### 3. 충청북도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 의견

: [결산검사 의견서] 따로 붙임.

4.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5. 토론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6. 심사보고 주요내용

가. 세입·세출 결산 총괄

(단위 : 천원)

예산액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세계잉여금
1,061,076,516	1,152,274,613	1,150,948,844	998,615,785	152,333,059

- 200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1,152,274,613천원이며,
- 세입결산액은 1,150,948,844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9% 수납되었으며,
- 세출결산액은 998,615,785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6.7%를 집행하였고,
- 세계잉여금이 152,333,059천원이 발생되어 이중 60,509,999천원은 다음년도 이월사업비에 충당되고 나머지 91,823,060천원은 다음년도 세입으로 이입되었음.
- 순세계잉여금 : 91,823,060천원
- 명시이월사업비 : 28,261,815천원
- 사고이월사업비 : 32,248,184천원

나. 세입결산

(단위 : 천원)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예산현액 대비 징수율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
1,152,274,613	1,150,980,524	1,150,948,844	13,678	18,002	99.9%	99.9%

2002년도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총 1,150,980,524천원을 징수결정하여 1,150,948,844천원이 수납되고 13,678천원의 불납결손과 18,002천원이 미수납 처리됨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99.9%, 징수결정액 대비 99.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 데,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 의존수입 930,485,270천원(80.85%)
  - 자체수입 220,463,574천원(19.15%)으로,
- 전년도 대비 재정자립도에 있어 자체수입의 비율이 2.0% 높아졌음.

다. 세출결산

(단위 : 천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율	불용율
1,061,076,516	91,198,097	1,152,274,613	998,615,785	60,509,999	93,148,828	86.7%	8.1%

2002년도 세출결산은 지출액이 998,615,785천원으로 예산현액대비 86.7% 집행되었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60,509,999천원으로 예산현액의 5.2%에 해당되며, 불용액은 93,148,828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1%인데,

○지출액 998,615,785천원의 내용을 관별로 살펴보면,

- 유치원 4,008,409천원(0.4%)
- 초등학교 137,946,718천원(13.8%)
- 중학교 119,990,879천원(12.0%)
- 고등학교 126,013,209천원(12.6%)
- 특수학교 11,010,768천원(1.1%)
- 기타학교 76,632천원(0.0%)
- 평생교육 1,907,927천원(0.2%)
- 급여관리 504,346,787천원(50.5%)
- 복지·후생 52,104,682천원(5.2%)
- 교육위원회 345,618천원(0.0%)
- 선거관리 228,628천원(0.0%)
- 교육청 10,566,676천원(1.1%)
- 지역교육청 4,424,185천원(0.5%)
- 교육지원기관 7,981,935천원(0.8%)
- 지방채상환 17,662,732천원(1.8%)

○다음년도 이월액 60,509,999천원의 관별 내용은,

- 유치원 989,737천원(1.6%)
- 초등학교 29,805,433천원(49.3%)
- 중학교 10,146,630천원(16.8%)
- 고등학교 12,463,355천원(20.6%)
- 특수학교 526,348천원(0.9%)

- 교 육 청 257,000천원(0.4%)
- 지역교육청 67,085천원(0.1%)
- 교육지원기관 3,503,194천원(5.8%)
- 지방채상환 2,751,217천원(4.5%)으로

이월사업의 대부분은 시설공사임.

○ 불용액 93,148,828천원의 관별 내용은,

- 유 치 원 533,171천원(0.6%)
- 초등학교 14,563,273천원(15.6%)
- 중 학 교 9,571,412천원(10.3%)
- 고등학교 10,165,053천원(10.9%)
- 특수학교 735,958천원(0.8%)
- 기타학교 2,660천원(0.0%)
- 평생교육 74,217천원(0.1%)
- 급여관리 15,998,407천원(17.2%)
- 복지·후생 4,611,765천원(4.9%)
- 교육위원회 21,003천원(0.0%)
- 선거관리 117,609천원(0.1%)
- 교 육 청 1,646,831천원(1.8%)
- 지역교육청 798,375천원(0.9%)
- 교육지원기관 3,224,793천원(3.5%)
- 지방채상환 1,035,268천원(1.1%)
- 예 비 비 30,049,033천원(32.2%)으로써

예산현액에 대한 총 불용비율이 8.1%로 '01년도 7.5%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며, 불용액의 대부분은 예비비·시설비, 급여 및 복지후생비 임.

#### 라. 이월비 결산

(단위 : 천원)

명 시 이 월		사 고 이 월		계 속 비 이 월		계		비 고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26	28,261,815	94	32,248,184	0	0	120	60,509,999	



2002년도 이월비는 명시이월 26건에 28,261,815천원, 사고이월 94건에 32,248,184천원, 총 120건에 60,509,999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85건이 감소하고, 금액으로는 30,688,074천원이 감소하였음.

마. 예비비 결산

(단위 : 천원)

건 명	예비비지출결정액	예비비지출액	잔액	비고
교육감 보궐선거 관리 경비	190,541	134,883	55,658	교육감 보궐선거 관리 경비
자연재해 복구비	388,900	346,980	41,920	2002.8.13.집중호우 재해복구비
	1,465,335	1,136,130	329,205	2002.9.5.태풍 "루사" 재해복구비
계	2,044,776	1,617,993	426,783	

위 건의 예비비 지출은 2002. 4월 충청북도교육감 보궐선거 관리에 따른 경비 지출과 2002. 8. 13.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해복구비, 2002. 9. 5. 태풍 "루사" 로 인한 자연재해복구비로 금회 제154회 임시회에 안전으로 제출된 "200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관련임.

바.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채 권

(단위 :천원)

종 류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년도중 발생액	당해년도중 소멸액	당해년도말 현재액	비고
재입 대료	11,397	16,297	9,692	18,002	폐교 임대료 미납금
재매 각대	36,000	0	36,000	0	폐교재산 매각대 분납금
수업료	27,802	0	0	27,802	세입금 횡령분
전세권	348,000	0	66,666	281,334	원어민 전세금 외 1
구상권	6,517	0	3,288	3,229	제천중학교 화재사건 구상금

종 류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년도중 발생액	당해년도중 소멸액	당해년도말 현재액	비 고
급여 청구	0	12,575	5,000	7,575	급여청구 소송
대 장 학 금	29,975,111	6,200,780	2,846,509	33,329,382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계	30,404,827	6,229,652	2,967,155	33,667,324	

채권은 2001년말 30,404,827천원에서 2002년도중에 6,229,652천원이 발생하고 2,967,155천원이 소멸되어 2002년도말 현재액은 33,667,324천원으로 채권액의 대부분(98.9%)이 공무원자녀 대여학자금임.

○ 채 무

(단위 :천원)

종류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년도중 증 감 액		당해년도말 현재액	기한도래 미지급 이자	비 고
		채무발생액	상환·소멸액			
차입금	80,352,000	0	13,848,000	66,504,000	0	재특용자금

채무는 2001년도말 80,352,000천원에서 2002년도중에 13,848,000천원이 소멸되어 2002년도말 현재액은 66,504,000천원으로 교원 명예퇴직수당, 학교 통폐합지원, 학교시설비 지원을 위한 지방교육채(재특용자금) 임.

사. 재산의 결산

○ 공유재산

(단위 : 천원)

구분 재산별	2001년도말 현재액	2002년도 증 감		2002년도말 현재액	비 고
		증	감		
합 계	1,887,203,822	123,614,385	15,971,204	1,994,847,003	
행정재산	1,850,292,006	114,209,326	11,654,021	1,952,847,311	
잡종재산	36,911,816	9,405,059	4,317,183	41,999,692	

공유재산의 2002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도에 비해 107,643,181천원이 증가된 1,994,847,003천원으로 이를 구분하여 보면,

- 행정재산의 2001년도말 현재액은 1,850,292,006천원으로 2002년도에 114,209,326천원이 증가되고 11,654,021천원이 감소되어 2002년도말의 현재액은 1,952,847,311천원이고,
- 잡종재산의 2001년도말 현재액은 36,911,816천원으로, 2002년도에 9,405,059천원이 증가되고 4,317,183천원이 감소되어 2002년도말 현재액은 41,999,692천원 임.

○ 물 품

(단위 : 천원)

2001년도말 현재액		2002년도 증 감				2002년도말 현재액	
		증		감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14,896	78,425,888	2,899	15,006,497	1,080	4,463,942	16,715	88,968,443

물품의 2002년도말 현재액은 16,715점에 88,968,443천원으로, 2001년도말 현재액 14,896점 78,425,888천원에 비하여 2002년도에 2,899점 15,006,497천원이 증가되고, 1,080점 4,463,942천원이 감소되었음.

아. 종합의견

위와 같이 심사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세입·세출 결산, 채권·채무 결산, 재산의 결산 등 각 분야별 결산 내용이 지방재정법을 비롯한 제규정과 교육비특별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에 의거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됨.

다만, 각종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에 적정을 기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소요예산 편성 시에도 합리적이고 적절한 판단으로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 가능한 한 익년도로 이월되는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7. 심사결과 : 원안대로 승인을 의결함.

8.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2003. 6. 27.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	김 남 훈	김남훈
간 사	성 영 용	성영용
위 원	고 규 강	고규강
	송 대 현	송대현
	이 기 수	이기수
	진 옥 경	진옥경

(별첨 6)

(제154회 임시회)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 심 사 보 고 서 (안)

2003. 6. 27.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 승인의견 심 사 보 고 서 (안)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년 6월 17일, 충청북도교육감

나. 상정 및 회부일자 : 2003년 6월 25일 제1차 본회의

다. 소위원회 심사

○ 제1차 소위원회(2003년 6월 25일)

○ 제2차 소위원회(2003년 6월 26일)

##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제안설명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 가. 제안이유

200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함.

### 나. 주요골자

지출사항은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의 충청북도교육감 보궐선거 관리경비 납부 요청에 따른 경비 납부금 134,883천원과 집중호우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일부지역의 교육과정 수행에 필요한 교육시설 피해복구비 346,980천원, 태풍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일부지역의 교육과정 수행에 필요한 교육시설 및 교재·교구 피해복구비 1,136,130천원임.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4. 토론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5. 심사보고 주요내용



가. 예비비 지출내역

(단위 : 천원)

건 명	지출결정일	지출결정액	지출액	잔 액	비 고
보궐선거 관리경비	'02. 4. 8.	190,541	134,883	55,658	교육감 보궐선거 관리경비
호우 재해복구비	'02. 8. 13.	388,900	346,980	41,920	청주, 충주, 진천지역 호우 피해복구비
태풍 재해복구비	'02. 9. 5.	1,465,335	1,136,130	329,205	영동, 옥천, 보은지역 태풍 피해복구비
계		2,044,776	1,617,993	426,783	

○ 교육감 보궐선거 관리경비 납부

- 2002. 4월 충청북도교육감 보궐선거를 위한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경비 납부요청 따라 지출한 것임.

○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지원

- 2002. 8. 5.~8. 9.일 기간 중 하절기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으로 청주, 충주, 진천 지역의 일부 교육시설이 피해를 입어 2학기 교육과정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이에 소요되는 복구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임.

○ 태풍 재해복구비 지원

- 2002. 8. 31.~9. 1.일 기간 중 태풍 “루사”에 의한 집중호우로 자연재해가 발생한 보은, 옥천, 영동 지역의 일부 교육시설이 피해를 입어 학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이에 소요되는 복구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임.

나. 종합의견

위와 같이 심사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금번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적정하게 처리되었다고 판단되나, 향후 재해 예방대책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6. 심사결과 : 원안대로 승인을 의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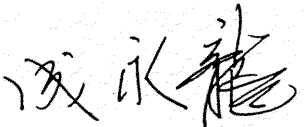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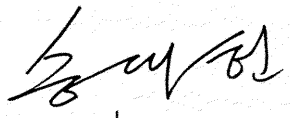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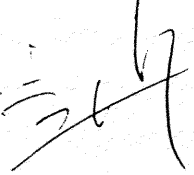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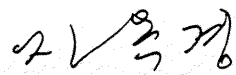
7.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2003. 6. 27.

예산·결산소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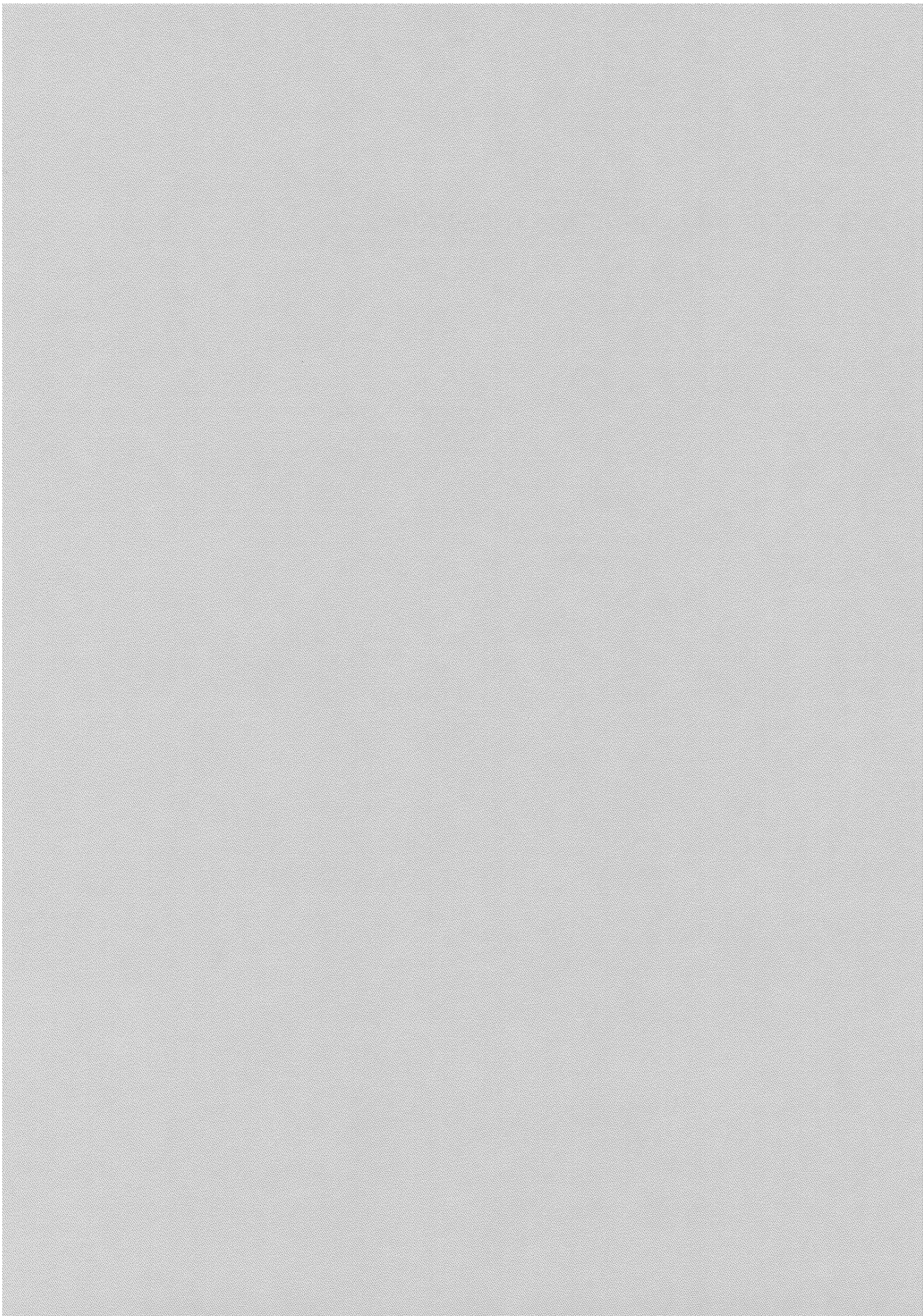
위원장	김 남 훈	
간 사	성 영 용	
위 원	고 규 강	
	송 대 현	
	이 기 수	
	진 옥 경	

第154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 豫算・決算小委員會 會議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 목 차

I. 제15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사회)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	.....51
II. 제15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사회)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	.....55
III. 부 록	
1. 예산·결산소위원회 의사일정안	.....95
2. 서면답변서	.....97



# 豫算・決算小委員會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3년 6월 25일 (수요일) 14시 29분

## 議事日程 (제154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 附議된 案件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14시 29분 개회)

하겠습니다.

### ● 위원장 직무대행 송대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소 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연장자로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위원장 선출에 들어가도록

### 1. 위원장선출의건

### ● 위원장 직무대행 송대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구두로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수 위원

김남훈 위원 추천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송대현

다른 추천 없으시죠.

김남훈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어 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남훈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남훈

여러 위원님께서 맡겨주신 예산·결산 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출의견

(14시 31분)

● 위원장 김남훈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견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방금 전의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대현 위원

성영용 위원 추천합니다.

● 위원장 김남훈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영용 위원님이 간사로 추천되어 본 소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성영용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 간사 성영용

위원장님을 도와서 이번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소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결정의견

(14시 33분)

● 위원장 김남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결정의견을 상정합니다.

편의상 의사일정안을 본 위원장이 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소위원회의 활동은 오늘과 내일 2일간으로 하여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본 위원장이 제의한 바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의사일정안(별첨 1)

(끝에 실음)

그럼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10시 제2차 소위원회에서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 34분 산회)

○ 출석위원 : 6명

위원장 김남훈, 간사 성영용,

위 원 고규강, 송대현, 이기수, 진옥경.

○ 출석공무원 : 3명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 부 록

▶ 예산·결산소위원회 의사일정안(별첨 1)



# 豫算 · 決算小委員會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3년 6월 26일 (목요일) 10시 02분

## 議事日程 (제154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

1.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 附議된 案件

1.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 02분 개회)

### ● 위원장 김남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소  
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  
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  
비비지출승인의건

### ● 위원장 김남훈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충청북도교육

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  
사일정 제2항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  
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  
니다.

먼저 학교운영지원과장으로부터 보충설  
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입니다.

2002회계년도충청북도교육비세입·세출  
결산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2002회계년도 결산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책자입니다.

▶ 참 조 : 2002회계년도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개요 - 본회의 (별책 2)

이상으로 2002회계년도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개요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남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위원님 좌석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영용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성영용

교육위원 성영용입니다.

우리 큰살림을 맡아 주시는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페이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순세계잉여금이 918억 2,306만원이 발생되어 있는데 2003년도 1

회 추경예산안에서는 918억 2,25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차액이 56만원이 발생됐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2003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나온 수치입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결산이 확정되어서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된 이후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때에 순세계잉여금하고 익년도의 1회 추경에서 잉여금하고 동액이 되어야 사실상 맞습니다.

지금 성영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회 추경예산 편성시기하고 결산서가 최종 완성된 시기하고 조금 시차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1회 추경예산에 편성할 때하고 조금 다소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과를 드리고 그 순세계잉여금 918억 2,306만원은 요것이 최종결산으로 보기 때문에 요금액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가 파악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그 차액부분은 2차 추경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 성영용

알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부속서류 45쪽이 되겠습

니다. 농협에서 발행한 증명서에는 다음 연도 이월액이 1,227억 4,000만원인데 우리 결산개요 3쪽에는 918억 2,306만원으로 되어 있는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차액이 309억 1,694만원이 되거든요.

● 진옥경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는데요. 지금 예비비에 관련한 심의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전에 위원장님 말씀은 예비비에 관련한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전반적인 결산에 관련한 심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 위원장 김남훈

일괄해서 지금 현재 질문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 진옥경 위원

아. 그렇습니까?

● 위원장 김남훈

예. 예.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지금 성영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산서 설명자료에 있는 농협에서 발행한 세계잉여금하고 지금 결산서에 나와 있는 세계잉여금의 그 차이부분은 저희들이 이번 질의 끝나기 전에 추가로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 성영용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돈의 여지가 있어서 그런데 예비비지출결정서에 20억 4,477만원이 지출액에 계상하지 않고 예산 현액에서 감액한 사유가 뭔지, 우리 개요 7쪽에 예비비지출내역 합계금이 20억 4,477만원이 되어있죠. 5쪽에는 지출내역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혼돈의 여지가 있지 않나?

●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부속서류 5쪽, 7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 간사 성영용

예. 그래서 이 관계를 지출결정하기 전에 집어넣으면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죄송합니다마는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면은 죄송합니다.

● 간사 성영용

그럼 5쪽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5쪽에 예비비지출결정액이 미리 20억 4,477만원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현액 이전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출결산서하고 뒤에 결산조서하고의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혼돈의 여지가 있지 않나 이래서 질의드린 겁니다. 방안을 꼭 이런 식으로 서식이 되어야 되는지 그거 좀 질의드리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남훈

답변준비 됐으면 답변해 주시죠.

● 간사 성영용

제가 질의하는 중점은 양식의 문제입니다. 혼돈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양식이 꼭 이렇게 되어야 되나 하는 거.....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저희들이 질문의 요지를 지금 명쾌하게 파악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려웠는데, 사실상 결산의 프로그램 자체가 교육부로부터 내려온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전국적으로 교육비특별회계를 통일한 서식에 의해서 총 집계를 내다 보니까, 지금 다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이해가 하기가 조금 불편스러운 서식이 있는 걸로 저희가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알기 쉬운 방법이 있다면 그건 앞으로 교육부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서식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간사 성영용

예. 알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50쪽입니다.

50쪽 11번 선거관리 예산이 1억 5,500만원에 예비비 1억 9,050만원 합계 3억 4,623만원이 되어 있는데 집행결과 불용

액이 1억 1,76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관계는 예비비집행 계획을 너무 과다하게 세운 것이 아닌지 앞으로 이런 일을 할 때에는 충분히 당초에 세워 가지고 불용률이 33.97%가 나왔는데 이렇게 나오지 않도록 집행계획을 잘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도 성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예비비 사용을 좀더 효율적으로 해서 정액의 지출에 가까운 금액을 썼어야 되는데, 사실상 위원님들께서 이해하다시피 작년도의 선거가 보궐선거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미리 예견해서 세우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작년 부터 선거를 주관하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초에 선거에 임하기 전에 얼마를 납부를 해주십시오 하고 통보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비비에서 일단 지출을 하고 선거가 다 끝난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정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은 3억 4,623만원을 납부를 했다가 선거가 다 끝난 다음에 제경비를 공제하고 반납 받은 게 1억 1,700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과다지급이 된 걸로 이렇게

표현상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효율적인 지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간사 성영용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개요 12쪽 전용에 관한 사항인데 미국현지 어학연수나 교원노조 국외연수는 당초에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데도 전용한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남훈

답변이 지연되고 있는데 준비를 미리 하셨다가 즉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반창남

교육국장입니다.

환율변동으로 인해서 당초예산 세울 때보다 환율이 증가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용이 부족해서 우선 관서운영비에서 전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간사 성영용

아니 환율이 얼마나 올랐길래 이렇게 많이 전용이 가능한 겁니까?

● 교육국장 반창남

환율 그러니까 388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학생 30명, 교원 30명, 60명의 항공료 항공료는 1,755달러 뭐 이렇게 해놨는데 국내 돈으로 환산해볼 때 대충 그렇게 부족분이 생기게 되어서.....

● 간사 성영용

아니 부족분이 어느정도죠.

1,300만원씩 1,400만원 가까이 환률 차액이 생긴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거 아닐까요?

● 위원장 김남훈

준비가 안 되셨으면 다음에 답변을 되도록 하고 다음질문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성영용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절감운영이나 집행잔액 같은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제가 보기에도 줄 수 있습니다마는 38쪽 참고해 주시면은 결산서 38쪽입니다.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운영에 80억 6,700만원이나 지급사유 미발생 300억 4,900만원 등이 예비비에서 불용액으로 발생한 것은 예산이나 집행에 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급여관리에서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문제는 주로 초등에서 발생한 사항입니다.

요것은 처음에 저희들이 교육부로부터 예산을 배정 받을 때 기준호봉을 교원의 1인당 몇 호봉이다 이렇게 해서 중간호봉으로 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초등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규교사를 임용한 관계로 인해서

그 호봉의 차이가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그 금액이 대다수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간사 성영웅

예비비 불용액인 지급사유 미발생된 것은 어떻게 답해 주실런지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예비비 불용액은 사실상 저희들이 예비비는 어떤 세출사업을 확정된 것이 아니고, 다음 추경에 세출재원을 위한 재원을 유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불요불급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 예산총액의 1,000의 5범위내에서 유념을 해놨다가 불요불급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같은 경우 예비비가 작년 연말에 본의 아니게 저희들이 12월 24일날 본예산이 통과되기 무렵에 예산이 교육부로부터 시달된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으면 교육문화회관을 짓기 위해서 20억을 연말에 저희들이 가져온 것들이 있고, 또 교육부로부터 도서관이라든가 다목적실 등을 위한 특별교부금이 이제 연말에 와가지고 예산에 편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예산들이 있어서, 그런 예산들은 일단 세입에만 잡아 놓고 세출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

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당초에 세웠던 예비비 중에서 실제적으로 세입은 더 많이 들어와 있고 세출은 저희들이 쓰지 않고 이렇다 보니까 거기서 차이가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비특별회계 의존 재원이 90%이상 되다보니까 사실상 90%이상 되다보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육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또 한 후에 도의회에 가서 심의를 받다보니까 거기서 한 시차가 한달 반정도 편성기간이 짧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교육위원님들한테 예산 마지막 심의를 받은 이후에 들어온 세입예산들을 세출로 직접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세입예산에 많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점도 저희들이 교육부에 건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시달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일찍 그걸 시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 간사 성영웅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68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중식지원 세항에 초등학교 급식지원에 4억 9,094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또 71쪽에는 중학교 1억 3,335만원, 78쪽에는 고등학교 2억 1,107만원,



또 87쪽에는 특수학교 1,653만원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데, 지금 우리 실정으로 봐서 결식아동으로 해서 사회적 물의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아이들한테 지원하지 못하고 발생한 이유가 뭔지 그거 한번 알고 싶습니다.

● 교육국장 반창남

교육국장입니다.

지금 성영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는 충청북도공동모금회, 월드비전충북지부, 기타 사회단체에서 성금 2억 7,488만 1,000원이 목적경비로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2억 7,000만원이 목적경비로 지원됐기 때문에 이러한 당초예산에서 그만큼 돈이 들어와서 불용액이 생겼고, 또 급식단가 차액, 식품구매에 따른 입찰차액, 실업계고등학교 3학년 2학기 현장실습, 취업, 자퇴생 이러한 사유가 발생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 간사 성영용

알겠습니다.

앞으로 가능한한 방향에서 최대한 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지역교육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공통적인 것이 예를 들어 청주교육청 같은데 결산서 196쪽 되겠습니다. 유치원 사학지원비 불용이 6,584만원으로 전체

예산에 전체 현액에 95%를 차지하는 그런 큰비용이 사학지원에 전혀해 주지 않고 있거든요. 각 지역교육청마다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학지원을 전혀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건지 앞으로 없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훈

어떻게 교육국장님 답변.....

● 교육국장 반창남

예. 지역교육청 일이라 제가 잘 몰라서 준비되는 대로 저희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 성영용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훈

성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질문 중에 해당되는 답변 주무부서가 나오지 않아서 답변의 지연을 초래하고 있는데, 지금 결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자가 나오셔서 대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송대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송대헌 위원

네. 송대헌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방대한 세입·세출결산서를 만드시고 한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노고

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미 다 집행된 부분입니다마는 다음 예산을 수립한다든가 집행하는데 우리가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참고될 사항이 도출될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간단간단히 여쭙보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페이지 5쪽이네요.

특별회계세입·세출총괄결산표를 보면 예산현액이 1조 1,522억 7,461만원 중 세출이 9,986억 1,578만원이 집행되어서 그 비율 대비 86.7%로 집행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까마는 86.7%의 집행으로는 예산이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담당관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송대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저도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우선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로써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연간 한 930억 정도의 불용액이 생기고, 또 순세계잉여금이 아까 성영용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918억이라는 우리도의 재정으로 보면 상당히 방대한 부분이 사용하지를

못하고 그냥 예산만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여러 차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예산 인적구조가 매우 타 시·도와 달리 매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정원미달이 초등학교원들이 상당히 미달이 되어 가지고 한 300여명 가까이 정원을 적게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인건비가 약 160억 정도가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각종 인건비에 부수되는 부담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금들이 덩달아 46억하고, 위원님들께서 잘 아다시피 2002년도에 교육여건개선사업 때문에 시설비가 대폭 증액됨에 따라서 거기서 시설비 잔액이 312억, 그 다음에 성영용 위원님께서 예비비가 불용액이 됐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예비비에서 한 300억, 기타 물건비나 경상비에서 약 98억 정도가 이제 미집행되다 보니까, 지금 송대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많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여건 속에서도 어렵게 예산편성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후부터는 최대한도로 잉여금이 적게 발생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 송대현 위원

지금 관리국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인건비, 부담금, 시설비 증액 여러 가지 집행의 사유를 열거해 주셨는데 다음번에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 참고적으로 할까해서 몇 가지만 좀 더 간략한 한 두가지만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잉여금쪽하고 불용액쪽에서 우리가 한번 잉여금속에서 이월금과 불용액의 조금 몇 가지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371쪽에 이월액을 살펴보면 다음연도 이월액을 살펴보면 구체적 이월의 구체적 사유를 쪽 살펴보면은 제1회 및 제3회 추경으로 사업기간 부족이 사업기간 부족이라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에 구체적인 사유를 적었습니다. 물론 사업기간 부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류입니다. 주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이월액이 605억 정도가 되는 중에서 명시이월이 282억이고 사고이월이 322억인데, 저희들이 의존 재원이 많다보니까 사실상 그 재원을 당초예산에 거의 예산을 편성을 못하는 부분들이 2회 추경, 3회 추경에 걸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설비 부분이 2차 추경이나 3차 추경에서 확정되는 경우에 설계기간에 따라서 많이 사업을 당해연도에 끝내지 못하고 이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당초예산에 모든 예산이 들어가면은 이것을 줄일 수가 있는데, 대개 이제 학교의 저희들이 요구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재원형편상 예산을 짜다 보니까 부득이 2차, 3차 예산에도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가급적이면 당초예산에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부분 중에서 상당부분이 또 저희들이 당초 예견치 못했던 그런 사업들이 학교교장선생님들로부터 신청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교육부로부터 특별히 자금이 늦게 내시가 되는 경우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도 가급적이면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월이 안될수 있도록 본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송대헌 위원

본 위원이 여기서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요. 매년 이와 같은 일이 반복해서 되풀이했다고 하는데 있습니다.

결국 어떤 문제를 물론 교육부하고도 관련이 되고 자체적인 문제도 있겠습니까. 마는 지적이 되면 과감히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이 안보인다는 점입니다.

또 내년에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2003년도 결산보고를 요부분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관리국장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과연 얼마나 내년에 성과를 가져왔는지 잘 지켜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정말로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하면 교육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그 구조를 깨뜨리는 것이 우리가 개선이고 발전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뭐 어쩔 수 없다 교육부가 예산 늦게 주니까 도리 없다 추경을 매달 또 올리자니 번거롭고 어쩔 수 없다 뭐 사실 필요하다면 추경을 더 자주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있겠고, 나름대로 우리가 몸부림치면은 현재보다는 이게 좀 줄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잘 집행청에서 내년에는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구요, 어차피 이월금쪽 했으니까 어차피 잉여금쪽의 불용액 문제도 또 한번 짚어봅시다.

성영용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불용액에 대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불용액쪽에서 보면은 유치원은 16쪽이 되겠고, 초등학교는 18쪽이 되겠고, 중학교는

24쪽, 고등학교는 29쪽, 특수학교는 54쪽 불용액 여러 가지 제가 대비를 내렸습니다. 10%이상 되는 불용액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단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 가운데 학생복지 및 건강증진 하나만 놓고 봐도 유치원은 약 12%, 초등학교는 약 12.5%, 중학교는 약 10%, 고등학교는 약 8.4%, 특수학교는 약 16% 분명히 나왔는데, 그 가운데 제가 더 문제를 삼고자 하는 것은 불용액의 내역을 보면 하나 28쪽에 중학교분만 보더라도 내역을 명시된 대로 보면 28쪽에 중학교분 불용액 내용을 보면 제일 많은 불용액에 대한 것이 집행잔액입니다. 9억 2,358만원, 두 번째로 많은 것이 불용액을 일으킨 것이 계획변경 및 취소 2억 9,484만원, 세 번째가 지급사유 미발생 3,880만원, 끄트머리로 맨 마지막으로 예산절감액이 192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집행잔액이 9억 중학교 하나만 예를 든 겁니다. 제일 1순위가 9억 2,358만원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계획부터 과다 책정한 것인지 학생복지나 건강증진을 소홀히 생각하여 추진이 부진한 것인지 우리 담당관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생복지부분 특히 시설사업부분이 집행잔액이 유치원서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많이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비들이 낙찰차액과 더불어 쓰지않은 사업들, 그 다음에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사실상 교육부하고 저희들하고 중앙정부에서 50를 대고 지방에서 50를 대고 그래서 5대5 사업인데,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일단 쓰고 나면 다른데에 쓰지를 못하고 그 재원 자체를 그대로 남겼다가 이월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경 이후에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남는 돈들을 다른데로 돌려쓸 수 없기 때문에 익년도의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재투자하기 위해서 남는 돈들이 거의 많은 주종을 이루고 있고, 또 시설비 중에서 단기년도 끝내는 시설비들이 낙찰차액이 거의 한 23% 정도가 남게 됩니다. 그 부분들이 지금 불용액으로 떨어져서 요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당 부분이 이 부분에 지금 불납액으로 남아 있는데, 불용액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소화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송대헌 위원

구조적인 문제도 있겠습니까마는 불용액이 한 가지 예를 든 겁니다. 복지예산

등 다른 항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만 더 들어 봅시다. 그러면 하나만 더 들어본다면 본청 총괄예산 41쪽이죠. 불용액이 16억 4,683만원이 나왔는데 그중에 예산절감은 1억 5,000정도 되고 집행잔액이 14억입니다. 14억 9,411만원이예요. 본청하나 지역교육청 빼고 다른데다 빼도 한 예를 드는 겁니다.

이러한 14억 9,411만원 이것이 전부 다 지금 지적한 구조도 그렇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던가 아니면 당초예산에 편성에 과대편성인가 아니면 집행을 안한 부분인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입니다.

본청에서만 14억 정도의 불용액이 나온 것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몇 가지만 예시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어민교사 운영에서 2억 5,6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신청인원과 교육부로부터의 배정인원에 6명 차이나는 그런 인건비가 되겠고, 교원단체에 대한 임대료 요게 1억원 정도가 있고 또 예산절감이 전체적으로 15억원 이런 유형으로 본청건만 이렇게 좀 대비를 할 수 있겠습니다.

● 송대헌 위원

예산절감이 얼마시라고요?

1억 5,000입니다, 15억이 아니라.

●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기획관리과장 안용균입니다.

지금 송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결산서의 관별로 작성된 것을 가지고 질문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사실은 지금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관별집계표를 가지고 나오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대헌 위원

예. 알았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특히 본청이든 지역교육청이든 학교든 마찬가지로 예산을 편성할 적에 신중히 해서 우리가 예산이 과대 편성해서 정말로 불용으로 떨어지는 일이 혹시 있지 않는가 해서 지적을 해본 부분입니다.

우리가 타성에 젖어서 지난 도에 얼마 세웠으니까 금년도도 이정도 세워 예산편성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결산의 목적이 여기에 과거에 이렇게 지적이 되었고 많이 불용이 되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감히 2003년도 예산에서 이 부분이 줄여서 들어와야 되는데, 금년도 예산에 이 부분이 이렇게 많이 줄어들어 왔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죠.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방금 전에 송대헌 위원님께서 질

의하신 내용도 교육정보 부분 한가지 예를 들시면서 14억 정도의 불용액이 생겼고, 또 작년도에도 계속 반복되는 사업들이 2002년도 결산에 또 이렇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예산이 잘못 편성되어 있는 거냐 아니면 집행에 소홀한 점이 있느냐 그거를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교육청이라는 관속에는 고등학교 사업이 전부 포함되어 가지고 불용액이 14억이 생겼다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사실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잘못된 부분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부분에서 많은 어려움 때문에 집행이 덜 된 부분이 더 비중이 많다고 볼 수 있는데, 주로 저희들이 시설비 쪽에서 낙찰차액이라든가 요런 과다하게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한 50%나 60%만 가져도 될 것이 편성되어 있는 것도 솔직히 한 두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에 좀더 정밀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심사를 좀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송대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시고요. 한 두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몇 건 눈에 보이는데 예를 들면 91쪽에 설명을 할 필요가 있네요. 91쪽에 특수학교 관계인데 교육환경개선에

사학지원비 쪽에서 예산대비 불 적에 59%나 되네요. 그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2억 4,600 정도가 4억 1,500의 예산 현액에서 2억 4,600이 59%가 이렇게 많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뭐 사유는 말씀 안하셔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편성에 우리가 보다 신중을 기하자 하는 뜻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성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한 중복된 부분 빼고요. 끝으로 우리 관리국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엇그제 이장길 관리국장님께서 제안설명서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2003년도 5월 9일부터 5월 16일까지 충청북도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이 검사를 받은 바 있고 전문위원의 심도있는 검사결과 첫째, 청주산성유치원 시설사업비의 이월예산 책정의 부당처리, 둘째, 신설학교 사업집행 부적정, 셋째, 지방재정법 40조 세출예산의 이월의 규정에 의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제도 예산운영의 부적정, 네 번째, 세입예산 편성미흡, 다섯째, 공유재산 폐교부지 관리미흡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집행청에서는 이 지적에 대한 문제점이 나 조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

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과 결산검사위원들간에 이견이 있는 부분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150만 도민의 대표가 지적한 결로 보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상충되어서 도의회 결산심의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한 대화가 서로 오고가야될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송대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산성유치원 시설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관계법령 상에 당해연도에 지출할 수 없는 예산에 대해서는 이월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월하는 과정에서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서 계약이 성립된 것은 저희들이 통상 사고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예산만 편성된 경우에는 명시이월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검사한 위원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산성유치원이 예를 들어서 예산이 10억이다 그러면 10억 속에 시설비 중에서 먼저 사전에 설계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설계를 마친 다음에 본 계약에 대한 사업규모가 확정되어 가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설계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정 부분을 예산에

따라서 설계를 할 수 있는 금액이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설계계약을 해가지고 설계 중에 있었는데 이것은 당연히 본예산에 포함된 설계비이기 때문에 이거는 연내에 확정될 수 없기 때문에 다음연도로 명시이월을 해야지 왜 사고이월을 했느냐 그 계약된 부분이, 그래서 저희들과 견해차이가 저희들은 행정문화인데 법령상의 어떤 위반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법령을 해석하는 기준이 당해연도 지출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범위와 당해연도 지출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 한계가 천재지변이라든가 아니면 불가항력적으로 지출할 수 없는 경우만 사고이월을 시켜야 된다는 검사한 위원들의 지적이었고, 저희들은 이미 채무가 확정된 것이다 설계비는 업자가 결정되어서 계약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확정되어서 납품이 내일이라도 되면 돈을 주려고 했는데 납품기간이 사실상 도래가 됐던 안됐던 간에 납품기간 전에도 납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교육부나 타시·도나 아니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과거부터 계속 이거를 계약이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는 사고이월,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는 명시이월로 해 왔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고, 그분들은 과연 그것이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불가사오로 인해서 집행할 수 없는 것이

나라는 물리해석적인 부분 요것 때문에 견해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도 위원님들 예산 심의하시는 거, 그 전에 감사원이나 교육부로부터 많은 감사를 받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지적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실무진 검토한 바에 의하면은 여러 학자 분들도 이것이 견해가 엇갈립니다. 현행 법령상 사고이월이 물리해석만 해야 되겠느냐 아니면 많은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듯이 채권이 확정되어 가지고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은 이거는 사고이월로 해야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견해가 엇갈립니다마는,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송대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이거를 사고이월로 안하고 명시이월로 하기는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도의회에 가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해명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신설학교 집행부적정이 라든가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 40조에 의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운영 부적정 요런 부분도 명쾌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150만 도민을 대표해서 오신 분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덜 발생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



다.

● 송대현 위원

이장길 관리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훈

예. 송대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가 1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신지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정회를 하기 전에 성영용 위원이 질의하신 중등교육과장님이 답변하실 해외연수경비 증액부분과 초등교육과장님이 답변하실 사립유치원 지원에 대한 답변을 정회 후에 듣고서 다음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 위원장 김남훈

좌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성영용 위원님이 질문하신 두건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국장 반창남

교육국장입니다.

성영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립유치

원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 만5세아 무상교육지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하고 소득기준에 의거 국고 50%, 지방비 50%를 대응투자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02년도에는 우리 도에 총 9억 9,216만 4,000원이 예산편성 되었는데 지원신청자 전원에게 교육인적부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 지원했습니다만 대상자가 적어서 지방비 2억 2,671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중 질의하신 청원군예산 6,924만 3,000원 중 343만원만 지출했는데 청원군에 사립학교가 없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이 적어서 지원신청한 대로 전액주고서 남은 돈이 6,584만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 간사 성영웅

국장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한 사항은 결산서류상에 나타난 부분은 예산현액에 비해서 집행이 너무 많이 안됐기 때문에 사학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냐 핵심은 그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늘 여기서 어떤 변화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걸로 해서 단지 앞으로 예산 집행하는데 대해서 사학에 대해서 지원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

결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여기에 연관해서 아까 청원교육청만 말씀드렸지만은 238쪽에 옥천교육청도 유치원에 운영지원비항목 중에서 사학지원비가 9,625만원이 불용되어서 75%가 안써 있어요. 그 뿐만이 아니라 영동교육청도 유치원에 259쪽이 되겠습니다. 80%가 불용됐어요. 7,094만원 물론 사학지원비입니다.

또 272쪽에 마찬가지로 영동교육청 사학지원비가 예산현액에 50%밖에 안써 있어요. 나머지가 1억 3,842만원이 남아 있고 괴산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예산현액에 50%밖에 안써 있어요. 여기에는 중등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 세항중에서 사학지원비입니다.

또 음성도 마찬가지로 337쪽에 운영비 지원항목중 사학재정결함 보조 세항 중에서 사학지원비 1억 450만원이 불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통적인 사항으로 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안써 있으니 사학에 대해서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지원이 없는 것이 아니냐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올해나 내년에 앞으로 사학지원에 대한 예산이나 집행을 할 때 참고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실 거냐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어떤 수치를 따지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집행청의 확고한 의지를 여쭙본 겁니다. 그 의지만 말씀해주시요.

● 교육국장 반창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지원은 공립하고 똑같이 저희가 폼하하거나 사립을 더 안준다거나 그런 사례는 한번도 없습니다.

다만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주기 때문에 신청액이 적어서 집행불용액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학이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 성영용

예. 감사합니다.

● 중등교육과장 임흥빈

중등교육과장 임흥빈입니다.

성영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교원단체 교사연구담당자 국외연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인적자원부 복지과에서 지난해 8월 22일 교원단체담당자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계획하라는 공문이 8월 22일자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추경하기도 어렵고 또 당초예산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치코어학연수에 여유분으로다가 전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연수는 꼭 시켜야 될 필요가 있고 해서 이렇게 된 거구요.

그 다음에 학생어학연수가 초등학생 15명, 중학생 15명해서 30명 어학연수를 떠났습니다. 근데 거기에 따라서 당초예산이 교사 30명을 포함해서 5,700만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근데 소요액은 환차에 따라서 6,088만 9,000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더 필요한 액수가 388만 9,000원이었기 때문에 이 내용도 다른 그런 어떤 여유분이 없기 때문에 관서운영비에서 전용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 **간사 성영용**

예. 시원하게 답변해주서 고맙습니다.

아까 그러면 환율차이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잘못 알고 말씀하신 거죠.

● **교육국장 반창남**

아니 환차가 발생했기 때문에 부족분이 생겼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 **간사 성영용**

아까 전용액이 1,389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알겠습니다. 중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아까 제가 성영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추후로 답변하기로 한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 45페이지에 농협에서 결산세부설명자료로 농협에서 발행한 저희들 누계액증명서 내용에 불비점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그 원인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영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세계잉여금에 대한 자금은 12월 31일로 회계연도가 끝남과 동시에 2003회계년도로 이입이 되어야 원칙입니다. 그러나 결산전이기에 저희들이 12월 31일날 전액 자금을 넘기지 못하고, 필요한 자금에 대해서는 몇 차례 걸쳐서 우선 갖다가 일정 부분을 쓰고 나머지 결산액이 확정됐을 때에 그 차액을 2003회계로 넘기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거를 45페이지에 있는 설명을 드리면 결산전에 2003년도로 넘긴 것이 1,227억 4,000만원을 넘겼고, 성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세계잉여금 1,523억 3,305만 9,480원과 차액 그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기 때문에 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그거는 3월 13일날 즉 교육금고에서 3월 10일날 잔액증명을 떠 준 이후에 3월 13일날 현재액을 넘겼

기 때문에 현재액이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세계잉여금 전액이 2003년도로 이입됐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훈

어떻게 답변이 되셨습니까?

● 간사 성영웅

예. 됐습니다.

● 위원장 김남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이기수 위원

이기수 교육위원입니다.

집행청에서 결산서 만드시고 또 집행하시고 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

다. 그리고 결산서를 보시고서 두위원님께서 아주 심도있는 질의를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또 제 평소의 생각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 잘 되어 있느냐 하는 적정성에 대한 문제를 한번 생각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두 위원님께서 불용액이다 또는 이월금이 많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본 위원도 동감을 하며 사실 예산편성을 적정하게 하려면 불용액을 적게끔 첫째, 편성해야 되겠고,

또 예산현액과 예산액의 차이도 추측을 해 갖고서 그걸 갭을 줄여 갖고서 말입니다. 거기에 가깝게 한다든지, 또는 전용이나 이체같은 것을 하지 않게끔 미리 소요 판단을 해 갖고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우리가 1,150억 정도도 되는데 사실 인건비가 거의 38.1%인가 해 갖고 4,000억 가까이 인건비가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7,000억하고 그 당시 불용액 이렇게 본다면 뭔가 좀 접근할 수 있는 금액이 말입니다. 1,150억이라든지 방대한 돈에 대한 추측보다는 돈이 줄어들고 꼭 나가야 할 것은 빼고 보는 얘기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이 좀 결산하고 거의 맞아떨어지게끔 해서 불용액이나 이런 부분을 줄일 수 있는 얘기인데, 매년보면 금년도에도 8.1%라고 얘기하는데 언뜻 보기에는 이게 뭐니까 1,500억 정도 되면 거의 10% 가까이 육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러면 매년 이게 지적했던 얘기인데 한 2,3년내의 불용액의 %가 어떻습니까? 줄었습니까? 안줄었어 요? 지금까지 한 3년전서부터 불용액의 %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우선 순세계잉여금에 작년에는 이게 757억 3,9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7.6%

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918억으로 해서 8.1%로 다소 좀 늘었습니다.

● 이기수 위원

재작년은 어떻습니까?

●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기획관리과장 안용균입니다.

지금 2000년도에 7.6%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2001년도에 7.47%, 2002년도에 7.96%가 되어서 다소 조금 높아진 편입니다.

● 이기수 위원

그래서 이게 해마다 결산검사때는 우리가 얘기가 불용액에 대한 지적은 해마다 단골메뉴입니다.

그러면 그쪽 우리 집행청에서의 답변은 노력해서 줄이겠습니다라는 얘기인데 더 늘었다는 얘기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지금 얘기했던 부분 같은 경우 말입니다. 예산현액하고 예산액하고의 차이도 추측을 좀더 정확하게 한다든지 또는 이월금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 해 갖고서 좀 줄이는 노력을 해야지, 매년 반복되는 얘기인데 이게 줄인다고 답변하고 우리는 줄여달라 집행청에서는 답변이 앞으로 노력하겠다 줄이겠다지만은 7.6%에서 8.1%까지 갔단 얘기는 0.5%가 더욱더 높아진 얘기인데, 이래

서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기획관리과장 안용균입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당연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불용액을 하여튼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은 그전에 어쩔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은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을 책정할 때는 전체 정원에다가 예산편성 단가를 해서 책정을 하는데 실제 임용인원은 그렇지 못합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약 한 260명 정도가 사실은 정원대비 임용이 안됐습니다.

그런 인건비차액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불용액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시설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마는 시설비에서는 주로 공개 입찰을 볼 경우에 86%내지 7%에 낙찰됩니다. 낙찰차액 13% 정도는 집행잔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1,000억을 집행한다면 치면 한 백 몇십억 정도는 집행잔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이제 예비비를 줄인다든지.....

● 이기수 위원

아니 우리 저 안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 보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한 예측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에서 변동을 한다든지 해 갖고서, 더욱더 다른 쪽에 투자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갖고서 회계연도가 끝날 때는 불용액이 주는 방법 그 방법은 어떻습니까?

●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저희가 경직성경비가 때문에 솔직히 저희가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고 시설비 같은 경우에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다음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그거를 넣으면 되는데 실지 집행잔액 발생시기가 후반기에 발생이 됩니다. 이게 왜냐 하면 예산을 갖다가 당초 예산도 설계해서 집행한다고 보시면 당초 예산이 보통 빨리해야 4,5월이 되는 거고, 1회 추경 같은 경우에는 7,8월 이렇게 됩니다. 9월 2회 추경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집행되기 때문에 실지 집행잔액을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것은 하반기 늦게나 파악이 됩니다. 그거를 가급적이면 집행잔액을 파악을 해서 다음 추경에다 다른 사업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방안이 되겠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겁니다.

또 한가지는 예비비가 저희가 금년에 300억 정도가 이월이 됐습니다. 통상 150

억 정도 내지가 예비비가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2002년도에는 연말에 교부금이 한 150억이 왔습니다. 그것이 플러스되다 보니까 300억이 이월됐는데 가급적이면 예비비도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 이기수 위원

그래서 이거는 말입니다. 전체 집행잔액을 토달을 정확하게 맞추려고 하시지 마시고 1년 예산을 집행해 가면서 적당히 시점에 소요 판단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몇 개 부분을 판단을 해서 그쪽의 예산은 좀 여유가 있을 것 같다 하는 것은 과감하게 다른 투자를 해 갖고서 집행잔액을 불용액을 줄여나간다는지 하는 방법을 특단의 조치를 취해 갖고서 해서 이거 좀 낮춰야지, 7.4%에서 7.6%되고 그것이 8.1% 된다든지 이렇게 안하시는 것이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알겠습니다.

● 이기수 위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불용액 문제에다가 또는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이렇게 이런 부분에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데,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지금 장관의 특별교부금을 좀 줄여달라, 감축해달라 이걸 집행청에서 건의하고 또 우리 교육위

원들도 같이 건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국교육위원회 지방교육재정확충위원회가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전국적 지역 교육청의 예산을 시설비나 건축예산을 수합을 해 갖고서 봤습니다. 근데 그것이 통합한 것이 전국에 2조 5,000억이라고 합니다.

근데 교육부에서 그쪽에 지출한 것이 3조 5,000억이 나갔습니다. 그럼 1조는 이게 장관 특별교부금이 아닐 것이라는 이런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특별교부금을 과다하게 교육부에서 가지고 있으므로 해서 적정할 때 이걸 편성하지 않고 나중에 7월이든지 8월이든지 이렇게 예산을 넘겨주므로 해 갖고서 당초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사를 발주할 수가 없고 모든 예산이 당초예산에 편성됐다든지 하면은 이월건수도 적어질텐데, 이것이 뭐냐하면은 늦게 주는 바람에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런 쪽으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육부에서 도교육청, 시·도교육청에서 같이 협의해서 장관한테 이거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왜 교육부에서 1조를 추정하고 있는데 그 방대한 것을 교육부에서 붙들고 있단 말입니다. 늦게 예시해 갖고서 예산이 추경에서 늦게 편성돼 갖고서 사업을 할 수도 없어

갖고서 이월되지 또 동절기 공사해야 되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있고, 또한 가지는 교육예산이라는 게 뭘니까 전부 우리 국민세금에 의해 갖고서 낸 것이 우리교육 예산으로 온 얘기입니다.

그러면 엄연히 그것이 당초예산에 쥐 갖고서 우리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승인이 돼 갖고서 해 갖고서 적정하게 쓰여야 되는 애기지 말입니다. 그렇지 않게 했을 경우에는 국민들한테 걷은 세금을 말입니다. 유용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떤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지금 이기수 위원님께서 특별교부금제도에 대해서 장·단점을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교부금제도를 교육부에 건의해서 예산을 줄이는 방안을 좀 건의해 볼 용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상 요것이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회계법의 규정에 의해서 특별교부금이 지금 인정된 법령사항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위원님들이 잘 아다시피 내국세 총액의 1,000분의 113이 이제 일반 우리 보통교부금으로 오는데, 그 중에서 내국세 총액의 1,000분의 13 중에서 11분의 1을 인구비례별로 해서 시도에 내주는게 아니고 장관님이 그때그때마다 특

별한 불요불급한 사업지원비로 쓰고 있기 때문에, 언뜻 내용상으로 보면은 재량권이 좀 다소 있는 그런 예산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많은 형평성이 문제가 되어서 지역에 따라 아니면 또 생각에 따라서는 그것이 좀 없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많이 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것이 현재는 법령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요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주안점이 될 것이고, 현재로써는 저희들로서는 타 시·도에 비해서 특별교부금이 적게 오지는 않다고 저희들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저희들이 순수하게 특별교부금이 공통적으로 오는 거나 아니면 수혜라든가 이런 때에 오는 걸 제외해 놓고 한 백 4,50억 정도 저희들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주로 아다시피 쓰이는 것이 특수 사업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집행하라고 하는 기준시설들은 우리가 이제 특별회계로 쓰는데, 물론 이것도 특별회계입니다마는 강당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권장시설들을 주로 많이 투입을 하고, 두 번째는 사립학교에 지원을 해 줄 때에 이 돈을 저희들이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자는 많고 저희들이 공급을 하는 입장에서는 적는데 혜택을 주다 보니까 이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형평성 문제도 되고 또 시기적으로 늦게 오기 때문에 불용액 과도 연결이 되고 이런 단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육부장관 입장으로써는 특별교부금으로써 자기가 하고 싶은 사업에 대해서 중앙정부차원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장점과 또 지방에서 일반보통교부금으로 할 수 없는 사업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점도 다소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기서 일방적으로 건의를 드리겠다 안드리겠다 답변보다는 저희들 좀더 심층토론을 하고 내용을 좀 검토를 해서 기회가 있다면 이런 부분들이 건의를 할 수 있는 성숙단계가 와있을 때 건의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 ● 이기수 위원

다음은 기채문제에 대한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교육부가 명퇴를 권장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퇴임하면 세사람의 봉급을 줄 수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추측까지 하면서 명퇴금을 기채에서 하라 그러면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850억에서 650억으로 기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별교부금으로 장관이 우리가 기채상환하는 거에 대한 시·도교육청에서 보조하고 있죠. 그거는 그렇죠.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특별교부금으로 오는 게 아니고요 당초에 기채를 할 때부터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상환을 하겠다는 조건하에 기채를 승인을 했고 또 저희들이 기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상환을 하고 특별교부금 뭉으로 오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기수 위원

그러면 당초에 기채상환금액에 대한 상환을 하라 이렇게 해 갖고서 그런 항목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네. 그것은 수시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할 때부터도 대개 예산지침에 보면은 그거를 얼마얼마를 편성해서 우리가 원금을 상환해 주겠다라는 것을 회의때나 회의자료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증액교부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증액교부금으로 오고 있습니다, 재원은.

● 이기수 위원

이것을 기채에서 할 때에는 교육부예산

보다는 재경부에서 특별지원해 갖고서 그만큼 더 줄테니까 기채를 권고한 그런 사항은 아닙니까? 이게 원래.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기수 위원

그럼 지금까지 이자 우리가 변제는 어느 정도 됩니까? 1년에 650억에 대한.....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거는 저희들이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전액 현재까지는 원금과 이자 그거를 저희들이 전액을 교육부로부터 받아서 상환을 했고, 또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조기상환 부분이 있어요. 조기상환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부분까지를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산서는 12월말로 이게 기준이 작성이 됐기 때문에 665억 400만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551억 270만원정도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551억인데 그 원금상환 그 다음에 이자 그 다음에 우리가 먼저 상환한 이자분 그 부분도 전부다 국고에서 오고 있습니다.

● 이기수 위원

그러면 제가 구체적인 사항을 쪽수를 넘겨 가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0쪽에 재산수입에서 말입니다. 결산액이 예산현액하고 결산액의 차이가 마이너스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된다면 재산수입을 처음에 예측했던 것보다 재산수입을 올리지 못한 결관데 어디에서 어떻게 8억정도 이상의 내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에는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연도중에 재산수입이 있을 것을 충분히 예견을 해야 된다는 예상액보다 약 8억 4,900이 더 수입이 많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로 그것이 토지매각대하고 건물매각대가 약 8억 5,000정도되는 사업들인데, 먼저 이유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11월 9일까지 마지막 추경에 올리기 위해서는 세원이 포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11월 9일 이후에 재산을 매각했거나 토지를 매각한 거에 대해서는 3차 추경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일단 세입으로 잡다 보니까 당초에 예산에 잡히지 않았던 약 8억 4,900이 추가로 입금이 된 내용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몇 가지 예를 들으면 음성교육청 원남초등학교

조춘분교장을 우리가 3억 8,000에 매각을 했는데 이게 12월 4일날 매매계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괴산교육청의 토지매각대금이 12월 24일날 또 7,500만원이 입금이 됐구요. 진천 초평초등학교에 국유재산으로 포함된 손실보상금이 있었습니다. 요것이 약 한 3,100만원 정정하겠습니다. 그 예산하고 부감관사로 되어 있던 게 3,100만원 요런 정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 3회 추경에 마지막 추경입니다. 마지막 추경편성 이후에 발생한 매각 재산된 수입이 있어 가지고 부득이 좀 늘어났습니다.

● 이기수 위원

페이지 28페이지에는 3,880만원인가요? 이게 지급사유 미발생은 어떤 내용입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제천 송학중학교 오수정화조 설치가 제천시 하수종말처리시설 구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가 단독으로 송학중학교에 오수정화조 설치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제천시의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그것이 커버가 되기 때문에 사업을 집행할 필요성이 없어져서 집행을 안한 내용입니다.

● 이기수 위원

그 다음에 31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충주여고 도서관신축 공사 납품지체라는 항목들이 나왔습니다. 그건 어떻게 해서 이월사유에서 말입니다. 납품을 지체한 이유가 뭐고 그랬을 경우에 추후에 납품을 지체한데 대한 정당성에 대한 것을 가려 보았으며 또 거기에 대한 업자가 납품을 지체했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제제라든가 이런 것은 없는 것입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본래 충주여고도서관도 이게 추경에 반영된 예산인데요. 이것이 충주여고를 가보셔서 알겠지만은 도서관위치선정 때문에 다소 시일이 있었습니다. 학교측에서는 운동장쪽에 그걸 짓기를 원했습니다마는 제가 현지답사를 해보니까 건축동선상 운동장에 올 사항이 못되더라고요. 이게 왜냐 하면 운동장 끄트머리 강당마냥 지어놓을 경우에 학생들이 이용하기도 불편할뿐더러 우기나 또 설중에는 도서관활용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서, 그거를 현재 있는 교실에 인입해서 짓다보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배전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좀 세워서 배전판 전기배전판을 옮기고 거기서 다시 설계해서 짓다보니까 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서 다소 설계가 늦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사실상 기간이 연내에

납품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항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그것이 당초의 순수한 도서관만 설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변전실 이전하는데도 상당히 설계하고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다소 공사 자체가 늦어졌고 납품이 늦어진 것으로 보고 드릴 수 있겠습니다.

● 이기수 위원

그러면 업자의 잘못이라든가 이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겁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현재는 뭐 그런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이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집행과정에서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걸로 보는 애기지 뭐 업자가 납품을 늦게 해 갖고 그것이 결국은 공사가 이월된 사항 아닙니까? 이월이후로 그렇게 달았는데 그러면 그게 아무렇게도 그러면 어떻습니까? 집행하는 쪽에서 잘못이 있는 겁니까? 업자의 납품을 적기에 맞추지 못하는데 잘못이 있는 것입니까? 판단을 어떻게 한 겁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우선 사업발주가 늦어졌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적지로 판단해서 짓고자 하는데 전기시설이 상당히 있는데 그게 약 1억정도 이전비가 들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을 확보해서 그거를 이전을 해야 될 그런 형편이었기 때문에 사업자체가 늦게 발주를 했고, 두 번째로는 업자의 과실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잠시 후에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기수 위원

그게 있다면 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다든지 하면 거기에 대한 조치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있다가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19페이지에 본다면 공유재산이 지금 늘은 걸로 되어 있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실지 우리가 매입한 게 있다든지 어떤 플러스 요인이 있어 갖고서 늘은 겁니까? 지가상승이라든지 건물가의 가격상승에 의한.....

●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주요원인은 증·개축에 따른 그런 증감 사유로 보고요. 지금 말씀드린 지가상승이나 또는 재평가에 대한 것은 5년주기로 하기 때문에 지난도에는 그런 요인이 없었습니다.

증축·개축에 따른 시설비 평가액의 증가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기수 위원

세입·세출결산개요에서 전에 전용부분이 나왔지 않습니까? 전용부분이 나왔는데 사실 행정세목에서는 전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용을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잘못 했을 경우는 악용될 수도 있는 얘기가 되지요. 결국은 집행을 적정하지 못한 부분으로 볼 수도 있는 얘기고 그런데, 지금 갑자기 교원노조 담당공무원 국외연수 항목으로 교육부에서 연수시켜라 이렇게 하니깐 1,000만원하고 1,300만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으로 그게 관서운영비에서 충당을 한 얘기인데 그러면 관서운영비라는 얘기는 각 부서에 운영하는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정도 빼고서도 운영할 수 있었는지 또는 아니든지 하면 좀 여유있게 해 가지고 풍족한데 과다하게 책정해 놓고 그거정도 빼서 1,300만원 정도를 전용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는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등교육과장 임흥빈

제가 이기수 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관서운영비가 예산액이 총 3억 5,130여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300정도 전용했다고 하는 것은 4%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약 4%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절감하는 프로테이지도 있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부지침에

의해서 해외연수는 시키라고 그러고 예산 책정은 사전에 예측되었던 그런 사업이 아니라서 세울 수 없었고 해서, 사실은 궁여지책으로 하다보니까 여기에서 할 수 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기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입니다. 관서운영비의 예산에서 집행하면 집행잔액은 제로로 됩니까? 거기 내가 그걸 확인을 못했는데.....

● 중등교육과장 임흥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훈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은 별도로 답변해 주세요.

다음으로 진행하세요.

● 이기수 위원

그러면 그거는 성격상 전용을 말합니다. 예비비에서는 전용할 수는 없게끔 되어있습니까, 예비비.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당초에 예비비는 전용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지 아니하고 예비비는 불요불급한 사항이 있을 때 예비비를 사용을 하고 예산심의권이 있는 교육위원이나 도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시에 그래서 제도가 생긴 것인데 이 사항은 불요불급한 사유가 그 예비비를 편성할 때

의 불요불급한 사항이라고 저희들은 보지를 않습니다.

왜냐 하면 예비비라는 거는 정말로 시일이 촉박해서 교육위원님들이나 도의원님들한테 예산심의를 받지 못할 그런 급박한 상황 쉽게 말하면 천재지변이라든가 아니면 갑작스레 폭설, 폭우라든가 아니면 무슨 재난이 있어서 예산을 심의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 쓰는 예산이며, 또 그런 예산들의 규모가 그래도 조금 위원님들이 심의를 할 수 있는 사업규모 정도는 되는 것들을 예비비에서 사용을 하고 결산승인을 받기 때문에 요것이 금액이 소액일 뿐더러, 요것이 저희들이 지금 예산총칙이나 관련 법규에 의해서 전용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예비비로 사용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 이기수 위원

그런데 예비비성격이라는 얘기는 불요불급하고 천재지변이다 이렇게 해 갖고서 우리한테 교육위원회 승인을 못받는단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걸로 되어 있지만은, 꼭 예비비사용 내역이 전부 그런 내용만 되어 있는 건 아닌 걸로 보고 있는데 전용보다는 예비비에서 집행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전용보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본래 예비비 보다는 전용이 주로 세항에 있는 목속에서 왔다갔다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사실상 목이라는 것은 엄격히 보면 행정과목이거든요. 그래서 행정부서에 쓰다가 여비가 부족하면은 수용비로 쓰고 수용비가 부족하면 여비로도 쓰고 이래서, 그 사업부서에서 최하의 사업 자체는 교육위원님들이나 도의원들이 사업을 인정을 해 주지만 내부에서 쓰다보니까 조금 수용비가 부족하니까 여비에서 쓰자 이런 것은 전용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 보다는 아마 전용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 이기수 위원

그러면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나머지 두 부분에 대한 확인은 진위원님 질의끝나고 하던지 요번 회의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남훈

예. 이기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입니다.

조금전에 이기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추가 답변을 지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남훈

지금 들으시겠어요?

● 이기수 위원

예. 예.

● 위원장 김남훈

예. 말씀하세요.

●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먼저 교육연수지원에 관서운영비 집행잔액을 여쭙보셨습니다. 결산서 79쪽에 보시면 그쪽에 위에서 상단 세 번째에 불용액이 9,362만 3,000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파악이 못됐습니다마는 전체 예산현액 대비 22.2%에 해당되는 약 9,300만원이라는 것을 우선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충주여고의 도서관증축공사에 있어서 납품지체로 인한 이월사유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업체에서 당초 설계용역의 납품기한이 2003년 2월 19일이 납품기한이 었습니다마는 실제 납품이 3월 14일날 납부되어서 22일간의 지체상금 163만 7,570원을 징구한 바 있음을 우선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이기수 위원

징구했죠. 그걸 알고 싶어서 했습니다.

그러면 요거 하나 다시 한번 보충질하겠습니까.

지금 관서운영비가 3억 한 2,000 아까 3억 3,000인가 과장님 그런 답변을 했는데 지금 불용액 9,3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됩니까? 거기서 전용 한계 1,300만원 그러면 1억 600만원이 불용액이 생긴 겁니다. 3억이라는 예산에서 1억 600만원이라는 얘기는 30% 불용액을 낸거요. 그럼 이런 예산은 과다하게 편성한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불용액 잔액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지금 파악이 안 돼서.....

● 이기수 위원

아니 이 건에 대한 얘기를 관서운영비란 얘기입니까? 소모성 경비 아닙니까? 이게 결국은.....

●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주로 큰 목이 교원연수경비인데 거기에 대한 불용액의 잔액사유는 추후 상세하게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참 조 : 서면답변서(별첨 2)

(끝에 실음)

● 이기수 위원

이 액수만 갖고 우리가 일별하면 말입니다. 3억 몇 천이라는 예산에 1억 600만원이라는 불용액이 생겼다는 얘기는 30% 이상을 불용액이 생긴 얘기에요. 그러면 이 불용액이 우리 전체 예산의 8.1%에 뒀다면 22.2%가 더 평균불용액보다 높고 이

거는 아주 과다하게 편성된 게 아니냐는 얘기죠, 이게. 어떻습니까? 그 얘기가 제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어떠세요.

●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기획관리과장 안용균입니다.

지금 이기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저희는 최대한 대로 적정경비를 계상을 하지만은 사실은 담당부서에서는 사업에 욕심을 내다보니까 그거를 과다편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기수 위원

이거는 30%이상이 33%가 숫자적으로 봤을 경우는 불용액이 생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8.1% 평균불용액도 많은 건데 평균불용액 많은데다가도 한 23%이상 이게 다른 것보다 더 생긴 얘기이니까 이런 항목은 다음번 예산편성에 아주 신중하게 항목마다 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나 답변을 좀 핵심을 잡아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진옥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진옥경 위원

진옥경 위원입니다.

결산부분에 숫자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지식이 부족한 저로서는 그저 교육위원회 결산심의회가 더하기 빼기가 맞았는가 그런 정도를 이제 살펴보고, 그 다음에 불용액이나 아니면 이월금이 많다 적다 그 정도를 이제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형편인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도 사실은 교육위원 중에도 이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결산검사의견서를 쓰는 작성한 요원들 중에 교육위원은 들어갈 수 없는지 그걸 한번 여쭙보고 싶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본래 결산검사를 할 때에는 위원들 선정은 지금 도의회 의원 중에서 의장이 아마 지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교육위원님들이 포함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 하면은 지금 저희들이 결산검사위원들로 참여한 분들 중에서는 도의회 의원들이 2명 있고, 그 다음에 전문가들로 회계사가 두 분, 세무사가 두 분, 그 다음에 전직공무

원 두 분 그래 가지고 여덟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근거에 이것이 아마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인원 숫자 정도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교육위원님들 중에서도 경력자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아마 충분히 포함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도에서 의장이 직접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인 답변 드리기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진옥경 위원

이런 부분들에 좀 문제가 있다고 여기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교육위원이 검사의견서를 작성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좀 전환하기를 바랍니다.

저 자신은 아직 결산에 대해서 지식이 많지 않지만 일단 결산검사의견서에 페이지 27페이지에 보면은 신설학교사업 집행 부적정이라는 항목에서 그 항목이 지금 사업명, 예산액, 2002년예산, 집행액 이렇게 착공일자 나와 있을 때 거기에 1회 추경과 2회 추경이 있는데 이것은 3회 추경이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1회 추경과 3회 추경이 아닌가요?

●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예. 각각 한개의 사업이 예를 들어서 1



번의 성화초등학교 신설사업의 경우에는 1회 추경에 13억을 확보했고 또 2회 추경에 추가 공사를 해서 4억 3,600만원을 확보하고 그래서 요거를 통합발주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 추경예산서를 보니까 3회 추경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예. 예.

● 진옥경 위원

12월 24일날 추경예산한 것은 2회가 아니고 3회죠.

●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예. 제가 말씀하신 것을 잘못 드렸습니다. 3회 추경인데 오기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 진옥경 위원

이거는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제대로 작성된 것입니까? 아니면 프린트상의 오류입니까?

●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작성과정에서의 오류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진옥경 위원

교육청에서 작성을 잘못하셨다는 말씀인가요?

●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물론 저기는 결산검사위원들이 작성을

하는 겁니다.

● 진옥경 위원

네.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부분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이 있지요. 그런데 명시이월을 제가 살펴보니 당해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한 예상되는 경비로써 세출예산에 명시한다 그리고 의회의 사전 의결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불용액이 있는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남아 있는 사업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결산서 53페이지에 보시면 명시이월의 항목들이 쪽 있고 다음연도 이월액이라는 것이 합계에 58억정도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페이지 53페이지입니다, 결산서 53페이지.

●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요것은 2002년도에서 2003년도의 이월이 아니고 2001년도에서 2002년도의 이월액을 명시이월액을 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런가요?

●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전년도 이월집행현황이기 때문에.....

● 진옥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명시이월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출액이 있고 다음연도 이월

액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2003년도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예. 맞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러면은 2003년도의 예산에 어디에 지금 명시이월이 넘어가 있는 걸로 되어 있나요?

저는 2003년도 본 예산에는 물론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2003년도 1회 추경예산에는 명시이월의 항목이 명시가 되고 또 저희 교육위원회에 사전의결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1회에 안 되면 2회에 이것을 작성하실 예정인지 저는 이 결산서가 나온 시점에도 아직 그것이 명시되지 않은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기획관리과장 안용균입니다.

지금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명시이월은 2002년도의 예산이라고 하면은 2001년도에 2002년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분 2001년도 예산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분은 2002년도 예산성립시에 명시이월로 승인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에서 2003년도로 명시이월되는 것은 2002년도 예산편성 시에 승인을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다음연도 이월액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이월, 명시이월 포함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작년도 3회 추경 당시에 2003년도 이월될 명시이월비가 거기에 같이 있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옥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다음연도 이월액이 그러니까 2002년도 결산서에 나왔던 이월액은 2003년도 예산서에 이게 나타나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결산보다 예산이 먼저 편성되기 때문에 이게 당초예산엔 편성이 안 되고, 마지막 추경 때에 이게 결산이 끝난 다음에 요것이 다시 저희들 추경에 부속서류로 이게 그대로 올라가게 됩니다.

● 진옥경 위원

2002년도 그러면 3차 추경예산서에 들어있나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2002년도 3차 추경에는 저쪽 2001년도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2002년도 3회 추경에 보면 2003년도에 이월될 명시이월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 진옥경 위원

2002년도?

●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2002년도 마지막 3회 추경에 보편은 명  
시이월 조서가 나와 있습니다.

● 진옥경 위원

제가 2002년도 3회 추경예산서를 봤는  
데요.....

●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제가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53쪽과 관련되는 내용들은 우선  
명시이월액이 총액쪽으로 572억원인데 이  
거는 2001년도에 명시이월된 금액이고,  
그 오른쪽에 지출액은 2002년도에 지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연도 이월액은 그  
당시에는 지출을 했기 때문에 이게 사고  
이월로 됩니다. 왜냐 하면 계약행위가 이  
루어져서 2002년도에는 지출이 이루어졌  
기 때문에 2002년도에 금액이 잔액은 이  
미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해서 예산서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사  
고이월금액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예산서  
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요렇게 알고  
있습니다.

● 진옥경 위원

아, 그러니까 다음연도 이월액은 사고  
이월.....

●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사고이월로 계약해서 지출이 이루어졌  
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진옥경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주 사천초부지 매입비가  
명시이월금액에 들어 있죠. 지금 전년도  
이월액 집행현황 해 가지고요. 이월액 부  
분의 53페이지이거든요.

●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11억 8,400만원 있습니다.

● 진옥경 위원

예. 예.

그러면 지금 사천초부지 매입비가 제가  
어저께 받은 자료를 보편은 기확보된 예  
산이라고 되어 있고 아직 못된 부분이 있  
다고 하는데 그럼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  
액수는 그것의 일부분입니까?

●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그렇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그 내용은 2002년도에  
매입이 된 것은 그건 이미 지출이 됐으니  
까 그거는 이월이 안 되고 매입이 안 된  
부분은 도저히 매입이 안 되기 때문에 명  
시이월비로 이월된 겁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27억 정도가 확보됐다는  
말씀이고요. 그렇죠.

27억 3,162만 8,000원 이것이 부지소요  
액으로 확보가 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러

면 이 안에 명시이월로 책정되고 지출된 이것이 포함된 것을 말하는 건가요?

여기에서 저희 어저께 이 자료를 설립 계획하면서 부지매입비가 지금 27억 3,000정도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럴 때에 여기에 이제 이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어제 설명을 드린 것은 어제까지 매입이 안되는 걸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일부분은 2002년도에 매입이 된 거는 명시이월로 안 되고 매입이 안 된 거는 다음에 명시이월로 지출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1월부터 매입이 시작됐으니까 매입이 안 된 거는 2002년 12월 말 현재 매입이 안 된 거는 일단 명시이월로 다 되었습니다.

● 진옥경 위원

명시이월로 그죠.

그래 지금 제가 살필 수 있는 부분들은 이런 것이 적정한 체제에 따라서 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세항의 어떤 관련 자료들이 없이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지 촉구도 하고 질의도 할 수 있는데 자료가 관련자료가

없으니까 제가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올라와 있거든요. 그럴 때 좀더 자세한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른 명시이월 전년도 이월지출액이 여러군데 학교마다 나와 있고, 이것이 지금 결산심의의견서에서 부적절한 그런 부분으로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더 자료를 알고 싶어도 자료가 없어서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천초등학교에 관련해서 지금 토지를 한번에 대충 학교를 지을 때 한번에 매입하는 것이 아닌지, 이것이 왜 이렇게 여러차례에 나누어서 물론 여기에서 토지매입의 사고가 있어가지고 지연되는 부분 이외에 왜 이렇게 여러차례로 나누어서 토지매입이 이루어지는지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기획관리과장 안용균입니다.

학교를 신설할 때 토지를 매입하는데 택지개발지구내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매입이 됩니다. 그러나 사천초등학교나 울봉초등학교 같이 사유지를 매입할 때는 그 토지소유주가 다 각각입니다. 여러 사람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토지를 매각하는 분이 있고 반대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필지 한 필지 사다보면 그것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부분적으로 매입이 되는 그러나 경우밖에 안 됩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2001년도에서 2002년도로 이월하는 과정이라든지 이것이 왜 명시이월 됐는지 잘 모르겠고, 지금 계속 연계된 사업으로써 지금 아직도 토지매입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확보액은 27억 정도가 되어 있다고 할 때 진행상황을 좀 알 수 있도록 다른 학교들도 궁금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사천초등학교 같은 경우를 경과를 좀 소상한 자료들과 함께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할 수 있겠으니까 여기에 관련한 자료들을 좀 구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예. 알겠습니다.

▶ 참 조 : 서면답변서(별첨 2)

(끝에 실음)

● 진옥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훈

예. 진옥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상당히 지났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마지막까지 오전에 끝낼까요? 오후로 넘길까요?

● 이기수 위원

오전에 끝내죠.

● 위원장 김남훈

그럼 조금 더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들이 다 해 주셨기 때문에 한 두가지만 저는 간단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어떤 중등교육과에서 나왔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입·세출 결산서 주요사업 추진실적 14쪽 원어민 외국어교육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어민을 활용한 외국어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예산 5억 4,58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2억 9,515만원만 집행하고 45.9%인 2억 5,064만원을 불용처리하였는데 그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고, 동사업이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은 사유와 앞으로 원어민활용 외국어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교육국장 반창남

교육국장입니다.

김남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교육청에서는 원어민 영어보조 교사를 11개 지역교육청에 1명씩, 단재교육연수원에 1명, 청주외국고등학교 1명, 중산외국어고등학교에 1명 그래서 14명을

배치할 계획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원어민을 모집한 결과 자원부족으로 우리교육청에 8명만 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원어민활용 외국어교육사업예산액 5억 4,580만원 중 불용액이 2억 5,064만 6,000원이 나왔습니다.

이는 미확보된 원어민 6명에 대한 원어민강사수당, 주택임차료, 항공료 등의 예산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각도에서 원어민을 저희가 채용을 해서 명실상부한 외국어교육을 실시하도록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원어민을 모집을 해서 시·도교육청에 배정하는 관계로 이러한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교육청 단독으로 원어민을 모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어민을 활용한 영어수업이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철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훈

예.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아까도 그와 똑같은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질문드린 내용은 그러한 말씀을 다시 듣기 위함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들 교육청 실상을 보면은 영재교육차원에서도 영어교육에 대해서 지금 현

재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또 치코대연수를 통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서 또 치코대연수를 보내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모든 책임을 교육부에만 지금 떠넘기는 그런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교육부에서 원어민이 오지 않았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다른 대책을 우리도 나름대로 세워서 예산전액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치 않은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뭐 교육부에서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도교육청 자체적으로다가 얼마든지 원어민을 갖다가 구해서 쓸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국장 반창남

예. 지금 말씀하신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어민이 안오는 것은 원어민의 강사수당이 200만원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본국의 수입하고 여기서 원어민으로 와서의 수입하고 격차가 벌어지기 때문에 오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시·도의 공통된 문제이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훈

예. 감사합니다.

여하튼 예산이 책정됐으면은 가급적으  
로다가 이러한 부분의 예산은 다 활용하  
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  
니다.

또 한 가지 질문드릴 것은 세입·세출  
결산서 178쪽 초등학교시설확충과목에 대  
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신설예산을 보면 2002년도 토  
지매입비 예산으로 39억 6,910만원과  
2001년도에서 이월된 11억 6,680만원을  
합쳐 총 예산은 51억 3,590만원인데, 집  
행상황을 보면 23억 1,791만 8,000원으로  
45.2%밖에 지출하지 않았고 집행잔액이  
전체 예산의 54.8%인 28억 1,798만 1,000  
원으로 불용처리 되었는데 그 사유를 말  
씀해 주시고,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  
하였으면도 신설학교부지를 계획대로 확  
보했다면 당초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편성  
한 것이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 51억의 예산이 장낙초등학교하  
고 내토초등학교 부지매입 예산입니다.

근데 장낙초등학교 토지매입비는 예산  
편성시에 저희들이 부동산 실거래 가격으  
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유지를 매입을 할 때는 감정가격으로

매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세운 거보다 약 한 7억원 정도를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에 좀더 면밀히 검토를 했으면 불  
용액이 적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지금 생  
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내토초등학교 토지매  
입비인데요. 당초에 저희들이 설립부지를  
예산을 세울 때에도 거래실제 가격에 의  
해서 전체 우리가 구입하고자 하는 평수  
에 따라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업무  
를 추진하다 보니까 제천농고 학교부지를  
약 만평방<sup>m</sup> 정도를 무상으로 관리이전 하  
다보니까 약 거기서 17억원 정도의 예산  
을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또 지금 현재  
내토초등학교 신설부지내에 소유권 분쟁  
이 있는 부분이 약 한 1,324평방<sup>m</sup>가 있는  
데 이것을 저희들이 언제가는 사들여야  
되는데 지금 아마 쟁송중에 있습니다, 소  
유권자들이.

그래서 그 부분을 한 2억 1,000만원 정  
도를 집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약 한  
54%밖에 집행을 못하고 약 28억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되어서 저희들이 죄송스럽  
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인인이 제천농고 학교부지를  
약 만<sup>m</sup>정도 받을 계획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에서 이 부분을 편성을 안 했더라면 불용액이 다소 줄 수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훈

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10시부터 지금 시간에 이르기 까지 각 위원님들께서 아주 심도있는 심의를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제가 정리해보면 교육위원님들 공통된 문제점이 명시이월이 됐던 사고이월이 됐던 이월금이 너무 많이 남는다 이월금이 너무 많다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이월금 부분에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금 보면 상승하는 그러한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이월금을 줄어나갈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두 번째로 예산이 제가 알기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축소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사업을 그런가 하면은 또 예산이 과다책정되어서 돈을 갖다가 지금 이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30% 정도가 과다책정됐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어떤 부서는 예산이 없어서 예산을 채우지 못하는데 반해서 어떤 부서에

서 예산을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해서 남는다는 것은 형평성의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수립하실 적에 이러한 부분을 좀 잡고 넘어가서 이러한 불균형이 나타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침부터 지금 12시 반인데 지금까지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에는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의결하겠습니다.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에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에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



[제154회-제2차 예·결산소위원회]

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에 적극 힘써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성실히 준비하여  
주신 집행청 관계관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청에서는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  
항을 잘 검토해서 앞으로 예산집행에 적  
정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소위원회 모든 일정을 마침과 아울러 제2  
차 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 32분 산회)

0 출석위원 : 5명

위원장 김남훈, 간사 성영용,

위 원 송대현, 이기수, 진옥경.

0 출석공무원 : 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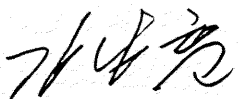
교육국장 반창남,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중등교육과장 임흥빈,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겸,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평생교육체육과장 이기석,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 부 록

- ▶ 서면답변서(별첨 2)

제15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예산·결산소위원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2003. 7. .

위원장 김 남 훈 

(별첨 1)

## 예산·결산소위원회 의사일정(안)

제15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03. 6. 25. (수) 본회의 종료후~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  1. 위원장 선출의 건 2. 간사 선출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03. 6. 26. (목) 10:00~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  1.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의건	



(별첨 2)

# 서 면 답 변 서

1. 관서운영비 불용액에 대한 단위사업별 금액(이기수 위원)
2. 사천초등학교 부지매입 계획대비 현황(진옥경 위원)

# 이기수 위원

## 1. 관서운영비 불용액에 대한 단위사업별 금액

□ 사업명 : 교원연수

장)학교교육 관)고등학교 항)교원연수연구지원 세항)교원연수지원 세세항)교육사업비 목)관서운영비  
(금액단위 : 원)

세 부 사 업 명	예산현액	집행액	불 용 액		비고
			금액	불용율	
학교폭력예방및근절 교원연수	19,007,000	14,773,000	4,234,000	22.3	
중등교원연수	92,000,000	88,164,000	3,836,000	4.2	
전공교과연수	14,111,000	13,934,030	176,970	1.3	
일본어특별양성연수	32,000,000	32,000,000	0	0	
미국현지어학연수	180,311,000	97,362,630	82,948,370	46.0	
통합표시교과자격연수위탁경비	83,651,000	81,222,720	2,428,280	2.9	
계	421,080,000	327,456,380	93,623,620	22.2	

□ 주요사업 불용 사유

### 1.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 교원연수 불용 사유

⇒ 전액 국고지원금으로 지원된 예산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 교원연수를 계획대로 실시하고 발생한 불용액임.

### 2. 미국현지어학연수 불용 사유

⇒ 예산 중 교사분에 대한 1인당 연수경비를 당초 계획시 보다 적게 집행하였고, 학생들에 대한 연수경비를 당초 100% 지원하려던 계획을 변경하여 50%를 지원함으로써 관서운영비 예산액 180,311천원 중 97,363천원을 집행하였고 82,948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음.

## 진옥경 위원

### 2. 사천초등학교 부지매입 계획대비 현황

#### 사업개요

- 가. 주 소 :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26-1
- 나. 개교예정일 : 2005. 3. 1
- 다. 설립규모 : 30학급

#### 학교부지(사유지)

(단위 : m<sup>2</sup>)

총 매 입 계 획	매 입	매 입 추 진 중	비 고
15,505	8,771	6,734	

#### 결산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전년도 명시이월액(B)	예산현액 (C=A+B)	지출액 (D)	다음연도 이월액(E)	불용액 (C-D-E)
내 역	1,513,710	1,184,469	2,698,179	1,184,469	1,513,710	0
예산성립일	2002.1회추경 (2002.5.14)	2001.3회추경 (2001.12.24)			2002.3회추경 (2002.12.24)	

#### 추진계획(현황)

토지매입 가격 및 잔여토지 매입 요구 등으로 협의 매수가 불가능한 토지에 대하여 2003. 4. 2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 2003. 6. 17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 결정되어 향후 토지 매입을 조속히 추진하겠음.

